

# 3 사회와 윤리

· 들어가기 전에 ·

## 이 단원이 수능에는?

- 분배 정의 파트, 형벌 파트, 시민 불복종 파트에서는 각각 한 문항씩, 총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 나머지 직업 윤리 파트, 니부어 파트, 국가 윤리 파트에서 총 두 문항 또는 세 문항이 출제될 것입니다.

##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 분배 정의 파트와 시민 불복종 파트의 경우 롤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두 파트에서 롤스의 사상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롤스의 정의론 전반을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분배 정의 파트에서는 롤스와 함께 노직이, 시민 불복종 파트에서는 롤스와 함께 싱어가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 형벌 파트의 경우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이 등장하는데, 각 사상가가 의무론, 공리주의, 사회 계약론 중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누가 사형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모든 사상가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무엇이 있는지, 각 사상가별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 인지를 중심으로 공부합시다.
- 이번 9월 모의평가에 갑작스럽게 직업 윤리 문항 대신 니부어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파트 모두 꼼꼼히 공부해 둡시다.
- 국가 윤리 파트의 경우, 아무래도 어렵게 나온다면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연권’, ‘주권’, 입법권과 행정권의 주체 등의 개념에 대한 각 사상가의 입장을 혼동하지 말고 잘 알아두되,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이 아니라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이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동양 사상가들(맹자, 한비자, 묵자)의 관점이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시다. 거듭 말하지만, 실제 수능에는 어떤 내용이 출제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모두 꼼꼼히 공부해 둡시다.



# Step 1. 실전 개념 포 파이널

이제 기본 개념은 가라!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개념과 변별 포인트, 그리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오늘의 오답 노트까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교 사상가들 모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직업을 분담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선호보다는 개인의 덕(德), 능력, 적성, 소질 등에 따라 직업이 분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하지만 키워드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상가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 \* 직업 윤리

### 1. 유교 사상가들(공자, 맹자, 순자)의 공통점

- ① 통치자와 백성 간의 분업 체계 및 상호 보완성 긍정
- ② 직업 선택의 자유 부정
- ③ 통치자와 백성 모두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함 (직분에 맞는 덕 발휘 필요)
- ④ 통치자와 백성 모두 다른 직분에까지 능통할 필요는 없음

- 01 [21-09-12] ① 공자: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 외에도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 ( )
- 02 [21-09-12] ② 공자: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
- 03 [21-09-12] ③ 순자: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
- 04 [21-09-12] ⑤ 공자·순자: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 )
- 05 [25-06-16] ㄹ. 순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부를 쌓아야 한다. ( )
- 06 [22-09-06] ③ 순자: 사회적 역할은 능력보다는 선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
- 07 [22-09-06] ⑤ 맹자·순자: 사회적 분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 08 [20-09-08] ③ 맹자: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 )
- 09 [20-09-08] ⑤ 순자·맹자: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
- 10 [24-09-14] ㄱ. 순자: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한다. ( )
- 11 [24-09-14] ㄹ. 순자: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 )
- 12 [21-11-09] ㄱ. 공자: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 )
- 13 [21-11-09] ㄴ. 공자: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 )
- 14 [21-11-09] ㄹ. 공자: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 )
- 15 [26-06-02] ㄷ. 순자: 도(道)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 ( )
- 16 [26-06-02] ㄹ. 맹자·순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 )

### 심화 유교 사상가들(공자, 맹자, 순자)의 제시문 구분하기

- ① 정명(正名),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 공자
- ② 대인(大人)과 소인(小人), 노심자(勞心者)와 노력자(勞力者), 항산(恒産)과 항심(恒心), 왕도(王道) 정치 → 맹자
- ③ 고대 선왕이 제정한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禮)(예의), 도(道)에 정통 or 사물에 정통, 후천적 직업관 → 순자

- 17 [21-09-12]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 ]
- 18 [22-09-06] 왕공(王公)과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의(禮義)를 힘써 행할 수 없다면 서인(庶人)으로 귀속시킨다. 서인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쌓아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있다면 사대부로 귀속시킨다. [ ]
- 19 [25-09-13]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풍년에 배부르고 흉년에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연후에야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 ]
- 20 [20-09-08]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을 쓰는 사람[勞力者]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 ]

## 2. 칼뱅의 ‘직업적 성공’

- 직업적 성공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징표 O 증표 O
- 직업적 성공이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인 것이 X  
직업적 성공에 대한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X

### 오늘의 오답 노트

#### 칼뱅의 “직업적 성공”만 나오면 자꾸 헛갈렸던 이유!

칼뱅의 입장에서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증표일 뿐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게 표현이 조금만 바뀌어도 헛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를 때마다 느낌에 의존해서 풀곤 했는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겠다.

칼뱅의 구원 예정설에 따르면, **구원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직업적 성공을 통해 구원 여부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구원이 직업적 성공에 대한 보상이냐는 선지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내가 직업적 성공을 하든지 여부에 따라 구원 여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칼뱅의 ‘직업적 성공’이 선지에 나오면, 그 표현에 따르면 직업적 성공 여부에 따라 구원 여부가 다르게 되든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주목해서 풀면 되겠다!

21 [25-11-08] ㄱ. 칼뱅: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이다. ( )

22 [19-04-16] ② 칼뱅: 직업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 )

23 [22-07-19] ② 칼뱅: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 )

### 심화 플라톤의 제시문 구분하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각자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직업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플라톤이다. 물론 마르크스를 제외한 모든 사상가가 분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특히 분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사상가가 바로 플라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 계층’을 언급하고 있으면 그 사상가는 무조건 플라톤이다. 더 나아가, 철학자가 통치를 맡아야 한다는 철인정치를 주장하고 있어도 플라톤이다.

24 [24-09-14]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서로의 일에 간섭한다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 ]

### 심화 칼뱅과 베버의 제시문 구분하기

칼뱅의 직업관을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과 연관지어 연구한 사람이 바로 베버이다. 따라서 칼뱅 같은 종교 개혁가를 이르는 ‘프로테스탄트(청교도)’라는 표현이 제시문에 등장할 경우 해당 제시문의 사상가는 베버이다. 한편 그러한 표현 없이 그냥 구원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에 대해 설파하고 있으면 칼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 [25-11-08] 신은 우리를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활 양식을 소명이라 이름 붙였다. [ ]

26 [19-11-13]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청교도는 철저한 노동 의무의 수행을 통해 신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시에 노동 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자본주의의 노동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 ]

## \* 분배 정의

###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기본)

- 일반적 정의 : 공익을 증진하는 공동체의 법을 준수하는 것(준법)
- 특수적 정의 { **분배적 정의** : 개인의 가치에 따라 **기하학적 비례**  
**교정적(시정적) 정의** : 이익과 손해만을 고려하여 **산술적 비례**

- 01 [18-11-09] ㄱ. 아리스토텔레스 :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인가? ( )
- 02 [19-03-14] ㄹ. 아리스토텔레스 : (가치에 비례하는 몫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므로) 옳지 않다. ( )
- 03 [16-07-13] ㄹ. 아리스토텔레스 : 분배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균등을 회복하는 것이다. ( )

###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심화)

- ① **균등 분배 반대** : 개인의 가치에 비례하여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동등하지 않은 몫을**’
- 오히려 균등 분배 시(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몫을 줄 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② **교정적 정의** : **상호 간의 교섭**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교정하는 정의
-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며, 이익과 손해에만 주목**

- 04 [19-03-14] ㄴ. 아리스토텔레스 : (사람들에게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
- 05 [16-07-13] ㄱ. 아리스토텔레스 : 시민은 법 앞에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 )

### 3. 롤스의 ‘원초적 입장’

- ①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상호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 ②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 시기심, 동정심이 없다.**
- ③ **무지의 베일** 때문에 **자신의 특수한 여건에 대해 알지 못하며,**
- ④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여건에 유리한 원칙을 제안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공정한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된다.
- 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지만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데 필요한 **경제학 · 심리학 등 일반 학문에 대한 교양 지식은 가지고 있으며,**
- ⑥ 더 나아가 사회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원초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모두가 준수할 것이라는 ‘**정의감**’에 기반한 **상호 신뢰와,**
- ⑦ 특정 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지식’** 역시 가지고 있다.
- ⑧ 이와 같은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 문화적 원시 상태 또는 실제 현실 상황이 아니라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 가상 상황이며,**
- ⑨ 무지의 베일은 롤스의 분배 정의에 적용되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 06 [26-06-19] 다. 롤스 :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 )
- 07 [26-09-11] ① 롤스 :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 )
- 08 [26-09-11] ③ 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는 않는다. ( )
- 09 [26-09-11] ⑤ 롤스 :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 ( )
- 10 [24-04-09] ②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 )
- 11 [25-09-10] 나. 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 )
- 12 [25-11-15] 가. 롤스 :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이다. ( )
- 13 [25-11-15] 나.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 )
- 14 [23-09-15] 다. 롤스 : 정의 원칙 수립 시 당사자 간 합의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가? ( )
- 15 [23-04-12] ②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합의한다. ( )
- 16 [22-07-07] 라. 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모두의 동의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가? ( )
- 17 [23-07-10] 라. 롤스 :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는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가? ( )
- 18 [22-10-10] 가. 롤스 :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선택되는가? ( )
- 19 [20-04-14] 나. 롤스 :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가? ( )
- 20 [20-04-14] 다. 롤스 : 합의된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된 것인가? ( )
- 21 [24-10-12] 나. 롤스 :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는 공정한가? ( )

#### 4. 롤스의 ‘정의의 원칙’

- 사회의 기본 구조와 각종 법, 제도, 정책에 적용되어 실현되며, 현실에서 상호 협동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공정한 분배 원칙으로서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가 됨
-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기본적인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 ②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주요 직위나 직책에 대한 접근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
- ③ **차등의 원칙** :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지 않는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음

- 22 [25-06-15] 나. 롤스 :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 )
- 23 [21-06-07] ① 롤스 :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한다. ( )
- 24 [21-07-10] 다. 롤스 : 명령할 수 있는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부여해야 하는가? ( )
- 25 [22-03-09] 다. 롤스 :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
- 26 [23-04-12] ① 롤스 : 재능과 동기가 유사하다면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한다. ( )

#### 5. 롤스의 ‘기본적 자유’

- ①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가치이므로,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 복지 정책, 공익 증진 등 자유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없다.**
- ② 그러나 **기본적 자유끼리 상충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도 기본적 자유의 체계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③ 기본적 자유는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 덜 광범위하게 보장될 수 있으며, 기본적 자유를 덜 보장 받는 쪽이 동의하는 경우 불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다.
- ④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는 **분명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

- 27 [21-11-10] 라. 롤스 :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
- 28 [23-11-09] 나. 롤스 :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하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
- 29 [22-06-07] ② 롤스 :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 )
- 30 [22-11-10] 다. 롤스 :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 )
- 31 [23-10-10] 나. 롤스 :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는가? ( )
- 32 [24-10-12] 다. 롤스 : 기본적 자유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

롤스의 정의의 세 원칙 사이에는, 원칙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를 대비하여 일종의 우선순위, 즉 ‘**차차적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롤스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마지막으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차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다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은, 롤스의 입장에서 금지됩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타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롤스는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때 ‘배타적’이라는 것은 ‘타’인을 ‘배’제한다, 즉 나의 독자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의의 세 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나의 재산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나는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배 정의 파트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 중에서도 '재산 소유의 자유(사유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민 불복종 파트로 가면, 조금 더 다양하게 기본적 자유의 종류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다 암기해 두시다.

## 심화 기본적 자유의 목록

롤스가 제시하는 기본적 자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자유(투표권, 공직 진출권), 인신의 자유(신체의 권리),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사유 재산권).

- 33 [24-06-08] 나. 롤스: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 평등해야 한다. ( )
- 34 [22-09-10] 르. 롤스: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가? ( )
- 35 [20-11-10] ② 롤스: 사유 재산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
- 36 [21-09-18] 그. 롤스: 사유 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
- 37 [20-07-10] 드. 롤스: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 재산 소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 )

## 5. 롤스의 '차등의 원칙'

—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지 않는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

→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이지만, 최소 수혜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원칙은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나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칙이다. 즉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를 비롯하여, 더 많은 운을 타고난 최대 수혜자까지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상호 협력 체계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을 주는(호혜적인) 원칙**이다.

### ② ... (이익을) 주지 않는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즉 차등의 원칙은 절대로 불평등을 금지하거나 제거하려는 원칙이 아니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에서 제시하는 조건, 즉 ‘모든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불평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더 많은 운을 타고난 자가 최소 수혜자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용인되지 않게 되며, **평등 분배가 허용되게 된다**.

- 38 [26-06-19] 르. 롤스: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 )
- 39 [23-11-09] 그. 롤스: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
- 40 [22-11-10] 나. 롤스: 차등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 )
- 41 [24-09-15] 나. 롤스: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 )
- 42 [24-09-15] 드. 롤스: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가? ( )
- 43 [24-04-09] ① 롤스: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 )
- 44 [19-04-19] 드. 롤스: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 )
- 45 [20-07-10] 나. 롤스: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는가? ( )



## 6. 노직의 ‘정의의 원칙’

- ① **최초 취득의 원칙** :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즉, **타인이 누리 오던 혜택을 크게 침범함으로써 타인의 처지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한**), 개인의 노동을 투입하여 자연물을 최초 취득한 자에게는 소유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
- ② **이전(양도)의 원칙** : 소유권자가 있는 소유물이 자발적으로(자유롭게) 이전(양도)된다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 역시 함께 이전(양도)된다는 원칙
- ③ **교정(시정)의 원칙** : 최초 취득의 원칙 혹은 이전의 원칙에 어긋나는 현실 상황의 부정의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교정을 인정하는 보완적인 원칙

- 46 [26-06-19] 나. 노직 :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 )
- 47 [22-09-10] 다. 노직 : 최소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 )
- 48 [22-06-07] ③ 노직 :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49 [22-06-07] ⑤ 롤스 · 노직 :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 준다. ( )
- 50 [20-09-17] ③ 노직 :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51 [20-11-10] ③ 노직 :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
- 52 [24-11-14] 다. 노직 :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 )
- 53 [25-09-10] 라. 노직 :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 )
- 54 [23-03-09] 나. 노직 :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 )
- 55 [23-10-05] 가. 노직 :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
- 56 [23-04-12] ③ 노직 : 부정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 )

우리는 노직의 정의관이 절차적 정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직에 따르면, 예컨대 **최초 취득이 정당했어도 이전이 부당했다면 교정의 대상이 되며, 마찬가지로 이전이 정당했어도 최초 취득이 부당했다면 역시나 교정의 대상이 됩니다.**

## 7. ‘정형적 분배 원리’와 ‘역사적 원리’

- ① **정형적 분배 원리** : 분배가 어떤 가치의 서열에 따라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는 분배 원리  
→ **필연적으로** 국가의 재분배를 요구 → **필연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
- ② **역사적 원리** : 분배에 있어서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분배 원리
- ③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 비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인 분배 원리**

- 57 [23-06-09] 다. 노직 :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
- 58 [20-06-15] 가. 노직 : 정형화된 재화 분배 원칙은 분배적 정의에 위배되는가? ( )
- 59 [21-09-18] 나. 노직 :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 )
- 60 [21-06-07] ③ 노직 :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 )
- 61 [21-06-07] ⑤ 노직 :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 )
- 62 [21-06-07] ④ 노직 :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 )
- 63 [24-04-09] ③ 노직 : 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의 결과는 정의롭다. ( )
- 64 [23-03-09] 가. 노직 :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위배된다. ( )
- 65 [22-10-10] 라. 노직 : 정형적 분배 원칙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는가? ( )

우선, 노직의 소유 권리론은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정형적입니다. 한편 노직의 소유 권리론은 ‘취득과 이전의 절차’라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이기도 합니다.

### **심화**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인 분배 원리가 있다?!

정형적 분배 원리는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고 역사적 원리는 분배 결과보다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므로, 두 원리는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직에 따르면,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인 분배 원리가 존재할 수 있다.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독립적 기준이 역사적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역사적이면서도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덕적 공과(功過)에 따른 분배 원리’의 경우, 분배 결과가 ‘도덕적 공과’의 서열에 따라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정형적이지만, 동시에 도덕적 공과를 측정할 때 개인이 공과를 쌓아 온 역사적 과정을 보므로, 역사적이기도 하다.

- 66 [24-06-08] 가. 노직 :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 ( )

이처럼 노직은 국가의 다양한 역할을 긍정하기 때문에, 과세 정책 역시 긍정합니다. 즉 노직이 모든 과세 정책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개념입니다. 물론 노직은 최소 수혜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에 사용될 세금 징수에는 반대하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 정책에는 물론 찬성합니다.

## 8. 노직의 ‘최소 국가’

-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
-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 **최소 국가의 역할 세 가지**
  - ① **분배 과정에 개입하여 부정의를 교정**
  - ② **치안 유지 및 국가 안보**
  - ③ **공공재 건설**

67 [25-06-15] 다. 노직 :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선 안 된다. ( )

68 [24-09-15] 그. 노직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 )

69 [24-09-15] 르. 노직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 )

70 [24-11-14] 나. 노직 :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를 실현한다. ( )

71 [26-06-19] 그. 노직 :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 )

## 9.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

- ① **절차적 정의 : 분배 절차가 공정하면 분배 결과는 무조건 공정함**
- ②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
- ③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교정을 인정함
- ④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
- ⑤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천부적 자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
- ⑥ **운의 임의적이고 불균등한 분포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라고 봄**
- ⑦ **개인의 재산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며,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함**
- ⑧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면서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함**

72 [20-09-17] ⑤ 노직 · 롤스 :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 ( )

73 [24-06-08] 르. 노직 · 롤스 :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 )

74 [22-11-10] 르. 노직 · 롤스 :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 )

75 [20-11-10] ① 롤스 :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 )

76 [23-09-15] 그. 롤스 · 노직 :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 )

77 [20-06-15] 다. 롤스 :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되는가? ( )

78 [24-11-14] 르. 롤스 · 노직 : 개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 권리를 지닌다. ( )

79 [25-09-10] 그. 롤스 · 노직 :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 )

80 [25-11-15] 르. 롤스 · 노직 :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 )

81 [21-09-18] 다. 노직 :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 ( )

82 [21-09-18] 르. 롤스 · 노직 :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 )

83 [21-11-10] 그. 롤스 :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는가? ( )

84 [21-04-09] ② 롤스 : 천부적 재능으로 얻은 이익은 공정한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

85 [23-10-05] 나. 롤스 :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이므로 부정의한가? ( )



## 9. 왈처의 분배 정의

### ①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각 가치의 고유한 영역 간의 경계 중시

- 각 사회적 가치는 그 가치에 맞는 분배 기준, 절차, 주체에 따라 분배되어야 함
- 각 가치의 고유한 영역 간의 경계가 훼손되는 **전제(지배)** 현상을 비판함
- 고유한 분배 기준, 절차에 따라 분배된 결과로 소수가 특정 가치를 독점하는 현상은 인정함

### ② 공동체주의

- 동일한 사회적 가치도 상이한 사회에서는 상이한 사회적 의미를 가짐
- **사회적 가치의 분배 기준은 공동체의 특수성과 역사적 맥락을 반영해야 함**

- 86 [20-04-14] ㄱ. 왈처 :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 )
- 87 [20-03-05] ② (왈처가 보기에 노직과 롤스는)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 경계가 사라져야 함을 간과한다. ( )
- 88 [21-03-02] ④ (롤스가 보기에 왈처는)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도출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89 [24-07-15] ① 왈처 : 사회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 )
- 90 [24-07-15] ③ (왈처가 보기에 노직은) 특정 영역의 가치를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91 [20-11-07] ③ 왈처 :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 ) (윤사)
- 92 [20-11-07] ④ 왈처 :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 (윤사)

## 10.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 ① 노동의 본질이 실현되고 자발적 노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 ② 노동이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생활 욕구가 되는 사회
- ③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 분업이 사라지고, 각자가 자유롭게 노동하는 사회
- ④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
- ⑤ **3無 사회 : 국가(정부), 계급, 사유 재산권(사적 소유권)이 없는 사회**

- 93 [22-09-10] ㄱ. 마르크스 :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 )
- 94 [22-07-07] ㄱ. 마르크스 : 계급 간 협력을 통해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해야 하는가? ( )
- 95 [20-11-07] ① 마르크스 :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 ) (윤사)
- 96 [20-11-07] ② 마르크스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 ) (윤사)

각 가치의 고유한 영역 간의 경계가 훼손되는 전제(지배) 현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돈은 돈에 맞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치권력은 정치권력에 맞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데, 부자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정치권력까지 (비리를 통해)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돈’만의 고유한 영역과, ‘정치권력’만의 고유한 영역 간의 경계가 훼손되는 현상으로, 전제(지배)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왈처의 입장에서는 **‘전제(지배)’ 현상과 ‘독점’ 현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왈처는 공동체주의 사상가로서 사회적 가치의 분배 기준에 공동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적을 비롯한 특수한 여건에 대한 정보를 모두 배제한 채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롤스의 가상 상황으로서의 ‘원초적 입장’ 개념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공산 사회가 국가(정부)가 없다고 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가(정부)가 없다는 것이 곧 사회도 없다, 또는 공동체나 연합체도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연합체)는 존재하지만, 그 공동체를 통치하는 별도의 통치 기관으로서의 국가(정부)가 없을 뿐입니다.

## \* 형벌

가끔 “그러면 벤담은 혼자 사회 계약론 사상가가 아닌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벤담은 형벌 파트에서 혼자 사회 계약론 사상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벤담은 사회 계약론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사실도 헛갈리지 말고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래 놓고 나중 가서 “벤담도 사회 계약론 사상가 아니었어요?”라고 한다면, 벤담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 날지도 모릅니다(그럴 수만 있다면요).

칸트의 입장에서 처벌 = 응분의 보복입니다. 그렇다면, 칸트의 입장에서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응분의 보복을 받을 행위를 의욕한 것이다’ —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 1. 기본 입장

- 칸트 : 응보주의 + 사회 계약론
- 루소 : 사회 계약론
- 베카리아 : 사회 계약론 + 공리주의
- 벤담 : 공리주의

### 2. 칸트의 형벌론

- ① 형벌 : 공적 정의 = 응보(응분의 보복) =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 존중 위한 수단  
외부의 선(ex. 범죄 예방, 국가 안보, 공익 증진) 위한 수단은 X
  - ② 범죄자 : ‘처벌’이 아니라 ‘처벌 받을 행위’, 즉 ‘범죄 행위’를 의욕해서 처벌받는 것임
- 01 [23-06-10] ③ (칸트가 보기에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02 [22-09-19] ⑤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임을 간과한다. ( )
- 03 [20-09-19] ⑤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은 공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04 [24-06-09] ①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
- 05 [25-09-15] ㄷ. 칸트 :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
- 06 [25-09-15] ㄹ. 칸트 :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 ( )
- 07 [26-09-05] ③ 칸트 :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한다. ( )
- 08 [23-07-15] ⑤ 칸트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을 의욕했으므로 시행해야 한다. ( )
- 09 [23-03-04] ②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원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간과한다. ( )
- 10 [24-07-10] ㄴ. 칸트 : 사형 집행은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11 [24-03-17] ㄹ. 칸트 :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한다. ( )

### 3. 칸트 VS 루소

#### — 공통점

- ① 사형 찬성 :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정당한 권한을 가짐
- ② 살인범은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 — 차이점

- ① 살인범은 여전히 존엄한 인격체인가?
  - 칸트 : 살인범도 여전히 인간으로서, 생득적 인격성을 보유한 존엄한 인격체임
  - 루소 : 살인범은 더 이상 존엄한 도덕적 인격체가 아님
- ② 사형의 목적은 국가 안보, 범죄 예방, 시민의 생명 보전에 있는가?
  - 칸트 : 사형은 국가 안보, 범죄 예방 같은 외부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X
  - 루소 : 사형의 목적은 국가 안보, 범죄 예방, 시민의 생명 보전과 안전에 있음
- ③ 사형 외에도 살인범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존재하는가?
  - 칸트 :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보았을 때 오직 사형만이 살인죄에 상응하는 형벌임
  - 루소 : 살인범에 대해 사형 말고 추방형을 부과할 수도 있음

- 12 [21-11-19] ② (베카리아가 보기에 칸트와 루소는) 형벌은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13 [21-11-19] ④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사형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14 [21-11-19] ⑤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함을 간과한다. ( )
- 15 [21-09-13] ① 루소 :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 )
- 16 [21-09-13] ③ 칸트 :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 )
- 17 [25-06-19] ②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간과한다. ( )
- 18 [22-09-19] ④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
- 19 [20-09-19] ①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 )
- 20 [20-09-19] ②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살인자도 인간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 )
- 21 [24-06-09] ②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
- 22 [24-06-09] ③ (베카리아가 보기에 칸트와 루소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23 [26-06-14] ④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사형은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
- 24 [26-06-14] ⑤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25 [20-06-19] L. 칸트 :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형벌이 존재한다. ( )
- 26 [24-11-11] C. 루소 :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 )
- 27 [22-06-19] ②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 )
- 28 [23-11-19] ③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살인범은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29 [23-11-19] ④ (루소가 보기에 칸트는) 모든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30 [23-09-12] ① 칸트 : 살인범은 살인을 의욕한 자로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 )
- 31 [23-07-15] ③ 칸트 :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득적 인격성이 상실된다. ( )
- 32 [21-03-15] ② 칸트 :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 )
- 33 [23-04-10] C. 루소 : 살인범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 )

## 심화 칸트의 사회 계약론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인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지체적 인격’과 ‘현상체적 인격’이 그것이다. 예지체적 인격이 완전하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인격적 측면이라면, 현상체적 인격은 불완전하고 감정과 욕구에 흔들릴 수 있는 인격적 측면이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입법자는 신성해야 하므로, 사회 계약의 과정, 즉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살인범에 대한 사형에 동의할 수 있는 현상체적 인격이 아니라 예지체적 인격뿐이다. 한편, 현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완전한 예지체적 인격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상체적 인격이다. 따라서 칸트의 사회 계약론에서는 사형에 동의하는 주체와 사형을 받는 주체가 동일하지 않게 되며, ‘형벌에 대한 범죄자의 동의’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34 [26-06-14] ③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받아야 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
- 35 [22-06-19] ④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
- 36 [21-09-13]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 ]

#### 4. 루소 VS 베카리아

— 공통점 : 사회 계약론

- ① 국가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 과정에서 동의한 형벌만을 집행할 수 있음
- ② 형벌의 정당성은 개인들의 동의에서 찾을 수 있음
- ③ 계약과 형벌의 목적은 사회 방위와 시민들의 생명 보호에 있음
- ④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

— 차이점

- ① 개인들은 사회 계약 과정에서 생명권을 양도하고 사형에 동의하였는가?

- 루소 : 개인들은 살인범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사형에 동의하였음
- 베카리아 : 누구도 자신의 가장 큰 자유인 생명권을 양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생명권은 애초에 처분이나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개인들은 생명권을 양도하지도, 사형에 동의하지도 않았음

- ② 형벌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루소 :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베카리아 :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

- ③ 형벌은 누가 제정하고 누가 집행하는가?

- 루소 : 형벌의 제정은 국민이, 집행은 정부가 함(‘형벌권’은 정부에 있음)
- 베카리아 : 군주가 형벌을 제정하고 집행함(‘형벌권’이 군주에게 있음)

- 37 [21-11-19] ③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간과한다. ( )
- 38 [21-09-13] ④ 루소 · 베카리아 :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 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 )
- 39 [25-06-19] ④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
- 40 [20-09-19] ③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적 정의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 )
- 41 [24-06-09] ④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 )
- 42 [24-11-11] 르. 베카리아 · 루소 :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 )
- 43 [22-06-19] ⑤ (베카리아가 보기에 루소는)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44 [22-11-09] L. 베카리아 · 루소 :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한가? ( )
- 45 [23-11-19] ②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생명권 양도 여부가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46 [25-11-16] ③ (베카리아가 보기에 칸트와 루소는)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
- 47 [25-11-16] ④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48 [26-06-14] ①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형의 정당화 근거가 아님을 간과한다. ( )



## 5. 공리주의 사상가들(베카리아, 벤담)의 형벌론

공리주의에서는 모든 것의 목적이 공리 증진에 있다고 보므로, 형벌 집행의 목적 역시 공리 증진에 있다고 본다. 이때 **형벌을 통해 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도는 바로 형벌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는 범죄란 사회적 손실을 의미하고, 그러한 사회적 손실을 막는 것은 곧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리주의 사상가들인 베카리아와 벤담은 모두 형벌의 주요 목적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본다. 참고로 범죄 예방 효과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 **일반 예방주의** : 시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
- **특수 예방주의** :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 방지

동시에, 베카리아와 벤담은 **범죄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는 범위 내에서,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악이며, 범죄자가 겪는 고통 역시 사회 전체의 공리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 49 [20-06-10] 다. 벤담 · 베카리아 :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 )
- 50 [20-06-10] 라. 벤담 · 베카리아 : 범죄자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다. ( )
- 51 [23-06-10] ① (벤담이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52 [23-09-12] ② 베카리아 :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 )
- 53 [23-09-12] ⑤ 베카리아 · 벤담 :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지력을 갖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 )
- 54 [26-09-05] ② 베카리아 :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써 억제해야 한다. ( )
- 55 [26-09-05] ⑤ 베카리아 :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한다. ( )
- 56 [23-07-15] ④ (벤담과 베카리아가 보기에 칸트는)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해 범죄자에게 행해져야 함을 간과한다. ( )
- 57 [24-07-10] 나. 베카리아 : 형벌 집행 시 범죄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가? ( )
- 58 [24-03-17] 다. 베카리아 :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 )
- 59 [23-10-09] ⑤ 베카리아 :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증대된다. ( )

## 6. 형벌 파트 사상가들의 공통점

- ①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② **형벌 =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적 보복은 X)
- ③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
- ④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음
- 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피해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님
- ⑥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 ⑦ **죄형 법정주의 :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을 통해 규정되고 집행되어야 함**

- 60 [21-06-10] ① (베카리아가 보기에 벤담은)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 61 [21-06-10] ⑤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와 벤담은)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62 [21-09-13] ⑤ 베카리아 · 칸트 :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 )
- 63 [22-06-19] ① (루소가 보기에 칸트와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64 [22-11-09] 다. 칸트 · 베카리아 · 루소 :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 ( )
- 65 [25-09-15] 나. 베카리아 · 칸트 :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 ( )
- 66 [26-09-05] ①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67 [22-11-09] 다. 베카리아 :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가? ( )
- 68 [22-11-14] 나. 베카리아 :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인가? ( )
- 69 [23-07-15] ① (벤담이 보기에 베카리아는) 보편적 원리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70 [22-10-07] ① 칸트 :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 )

①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범죄가 무거울수록 형벌도 무겁게, 범죄가 가벼울수록 형벌도 가볍게 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칸트**는 비례 관계 중에서도 **1:1 비례**, 즉 범죄와 형벌이 동일시되는 **1:1 비례 관계만을 긍정합니다** (동해 보복의 원리). 한편 공리주의 사상가들의 경우,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가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범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저해한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베카리아와 벤담은 범죄가 사회적 공익을 저해한 정도에 비례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②, ③ 이때 공적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는 물론 사상가들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형벌이 정의를 추구해야 하며,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 \* 국가 윤리

### 1. 아리스토텔레스 VS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홉스, 로크, 루소)

#### — 공통점

- ① 개인은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짐
- ② 개인은 국가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
- ③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 차이점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개인 간의 동의, 합의, 약속, 계약 같은 인위적인 과정 없이,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 : 국가는 개인 간의 이성적인 동의, 합의, 약속, 계약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위적 산물임**

- 01 [22-06-02] ③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 ( )
- 02 [22-06-02] ⑤ 로크 · 아리스토텔레스 :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 )
- 03 [21-06-20] ㄷ.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 )
- 04 [21-06-20] ㄹ.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 )
- 05 [22-09-07] ㄴ. 로크 :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수립된다. ( )
- 06 [22-09-07] ㄷ. 로크 :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 공동체이다. ( )
- 07 [23-09-19] ② (루소와 홉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08 [23-09-19]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홉스는)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음을 간과한다. ( )
- 09 [25-09-09] ㄱ. 홉스 :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 10 [22-11-15] ③ 로크 :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 )
- 11 [26-09-19] ㄷ. 홉스 · 루소 :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 )
- 12 [24-11-07] ㄴ. 홉스 : 국가는 신의(信義)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인가? ( )
- 13 [24-03-13] ㄷ. 루소 · 로크 :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사회 계약이 성립한다. ( )
- 14 [22-07-05] ① 아리스토텔레스 :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국가가 형성된다. ( )
- 15 [20-04-12] ① 로크 :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 ( )
- 16 [20-04-12] ② 로크 :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된 자연적 산물이다. ( )
- 17 [23-07-18] ⑤ 아리스토텔레스 · 홉스 :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 공동체에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 )
- 18 [23-04-05]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루소는)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 )
- 19 [21-10-06] ⑤ (홉스와 로크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 )

국가 윤리 문항 선지에서 '인위적', '자연적' 같은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이 포인트,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사회 계약론 사상가들의 차이점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그냥 멍하니, 홉스의 입장에서 국가가 자연적 인격이냐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지 말고, 바로 이 내용을 떠올려서 풀어 주어야겠지요?

## 2. 홉스의 사회 계약론

① 자연권 :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

② 자연 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법 X 소유권 X 정의 X 부정의 X 비참하고 잔혹한 상태 O

③ 사회 계약 : 자신의 생명을 소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 보전권(생명권)만 남기고, 나머지 자연권의 무제한적인 부분은 모두 양도

④ 정치 체제 : 절대 군주제

— 주권의 주체 : 절대 군주

— 군주는 사회 방위와 평화를 위해 모든 인민의 힘과 의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군주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절대 주권을 양도받은 제3자(외부인)이므로 사회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함

— 저항권 부정 : 개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군주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함

- 20 [23-06-11] 나. 홉스 :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 )
- 21 [22-11-15] ② 홉스 :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
- 22 [24-06-06] 나. 홉스 :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 )
- 23 [24-06-06] 나. 홉스 : 자연 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 )
- 24 [24-06-06] 다. 홉스 :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
- 25 [23-11-12] 다. 홉스 :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 ( )
- 26 [23-11-12] 라. 로크 · 홉스 :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 )
- 27 [24-11-07] 나. 홉스 :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한가? ( )
- 28 [24-11-07] 다. 홉스 :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하는가? ( )
- 29 [25-09-09] 나. 홉스 : 인간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 )
- 30 [25-09-09] 라. 홉스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 )
- 31 [25-11-10] 나. 홉스 : 절대 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 ( )
- 32 [25-11-10] 나. 홉스 : 사회 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 ( )
- 33 [25-11-10] 라. 홉스 :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 ( )
- 34 [26-06-08] ① 홉스 :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 ( )
- 35 [26-06-08] ② 홉스 :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 계약으로 탄생한다. ( )
- 36 [26-06-08] ⑤ 홉스 :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 ( )
- 37 [26-09-19] 나. 홉스 : 사회 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 )
- 38 [26-09-19] 나. 홉스 · 루소 : 사회 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 )
- 39 [26-09-19] 라. 홉스 : 사회 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 )
- 40 [21-10-06] ① 홉스 :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진다. ( )
- 41 [21-10-06] ③ (로크가 보기에 홉스는)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간과한다. ( )
- 42 [20-10-03] ③ 홉스 : 국가는 선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 )
- 43 [23-03-10] ① 홉스 :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44 [23-03-10] ② 홉스 :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의 해결권을 갖지만 입법자는 아니다. ( )
- 45 [23-03-10] ⑤ 홉스 :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 )
- 46 [22-10-12] ① 홉스 : 절대적 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 ( )
- 47 [22-10-12] ② 홉스 :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의 본인이 된다. ( )
- 48 [23-10-02] ② 홉스 : 군주는 절대 권력을 지니므로 사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
- 49 [23-10-02] ⑤ 홉스 · 로크 : 사회 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권이 보장된다. ( )
- 50 [24-04-15] ② (홉스가 보기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
- 51 [24-04-15] ④ 홉스 :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주권을 가질 수 있다. ( )
- 52 [24-04-15] ⑤ (로크가 보기에 홉스는) 개인이 가진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 )
- 53 [24-07-18] ① 홉스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불의에 맞서 자연권을 행사한다. ( )
- 54 [24-10-19] ① 홉스 : 주권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 )
- 55 [24-10-19] ② 홉스 : 사회 계약은 모든 자연권을 양도할 것을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없다. ( )
- 56 [24-10-19] ⑤ 홉스 · 로크 :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근거해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 )

국가 윤리 파트, 특히 사회 계약론에서 친구들이 가장 자주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자연권'과 '주권'입니다. 둘 다 '권'이라는 말로 끝나니까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연권은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권리로서, 자연 상태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주권은 한 사회의 주인되는 권리, 즉 한 사회에 대한 주된 통치 권력으로서, 사회 계약과 국가 수립 이후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홉스에 따르면, 개인은 생명 보전권은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경우 개인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저항권'을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항권은 철학계에서 '혁명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홉스는 확실히, 인민이 군주를 교체하기 위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크는 국가에 대한 동의를 크게 '명시적 동의'와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구분합니다.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준법의 의무, 즉 국가에 복종할 의무)는 물론이고,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국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의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국가의 땅을 밟고 있음, 즉 영토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내가 그 국가의 법에 따르겠다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준법의 의무, 즉 국가에 복종할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 3. 로크의 사회 계약론

- ① 자연권 :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소유권), 자연법의 집행권(재판권, 처벌권)
- ② 자연 상태 : 대체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 자연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 개인들은 자연법을 인식하고 있음
  - 모두가 재판관이자 처벌관이기 때문에, 자연법의 위반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 즉 자연법의 집행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됨
  - 개인들은 공평한 재판관이자 공통의 권력으로서의 국가를 원하게 됨
- ③ 사회 계약 : 자연법의 집행권(재판권, 처벌권)을 양도
  - 생명권과 재산권은 양도 X
  - 자유권은 일부 양도
- ④ 정치 체제 : 간접 민주주의
  - 주권의 주체 :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있으나, 국가 기관에 의해 주권이 대표됨
  - 입법권은 입법부에, 집행권(행정권)은 정부에 신탁됨
  - 저항권 인정 :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은 신탁된 권력이므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개인은 신탁을 철회하고 입법부나 정부를 교체할 수 있음

- 57 [22-06-02] ① 로크 : 국가는 공동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 )
- 58 [23-06-11] ㄱ. 로크 :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인가? ( )
- 59 [23-06-11] ㄴ. 로크 :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 )
- 60 [22-11-15] ④ 로크 :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 )
- 61 [22-11-15] ⑤ 로크 :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지속될 수 있다. ( )
- 62 [23-11-12] ㄱ. 로크 :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는 재판관이 된다. ( )
- 63 [23-11-12] ㄴ. 로크 : 정부에 신탁된 권력은 시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 ( )
- 64 [24-09-13] ㄱ. 로크 :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 )
- 65 [24-09-13] ㄴ. 로크 :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 )
- 66 [24-09-13] ㄷ. 로크 :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동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 )
- 67 [24-11-07] ㄹ. 로크 :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지는가? ( )
- 68 [25-09-09] ㄷ. 로크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
- 69 [25-09-09] ㄹ. 로크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 )
- 70 [25-11-10] ㄷ. 로크 :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 )
- 71 [25-11-10] ㄹ. 로크 :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 ( )
- 72 [26-06-08] ③ 로크 : 정치 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 ( )
- 73 [26-06-08] ④ 로크 : 자연 상태에서 공동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 ( )
- 74 [26-06-08] ⑤ 로크 :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 ( )
- 75 [24-03-13] ㄴ. 로크 :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 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 )
- 76 [22-07-05] ④ 로크 : 시민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 )
- 77 [20-10-03] ④ 홉스 · 로크 : 국가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 권력체이다. ( )
- 78 [22-04-13] ③ 로크 :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 )
- 79 [22-04-13] ④ 로크 :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 )
- 80 [23-03-10] ④ 로크 :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 )
- 81 [22-10-12] ④ 로크 : 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 )
- 82 [22-10-12] ⑤ 홉스 · 로크 :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해야 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83 [23-10-02] ④ 로크 :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
- 84 [24-04-15] ④ 로크 :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주권을 가질 수 없다. ( )
- 85 [24-07-18] ④ 로크 :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
- 86 [22-03-15] ⑤ 로크 : 국가 질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유지된다. ( )
- 87 [24-10-19] ③ 로크 :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 )

## 심화 로크의 키워드

특징이 뚜렷한 홉스나 루소와 달리 로크의 경우 제시문을 잘 판별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크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① **공통의 재판관, 공통의 법률, 자연법의 집행권(재판권, 처벌권)**
- ② **국가의 목적이 개인의 재산권 보장에 있음을 강조함**
- ③ **신탁, 국가에 대한 저항권(혁명권)을 주장함**

88 [25-11-10]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이다.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 ]

89 [26-06-08]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단을 치유할 목적을 시민 사회가 등장한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자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 ]

90 [24-11-07]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 저항할 수 있다. [ ]

## 4. 루소의 사회 계약론

- ① 자연권 : 생명권 등
- ② **자연 상태 : 완벽하게 평화로운 상태**
  - 사회 상태로 가면서 사유 재산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유 재산권의 발생으로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것이 극심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됨**
  - 개인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됨**
- ③ **사회 계약 : ‘모든’ 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양도**
- ④ **정치 체제 : 직접 민주주의**
  - **주권의 주체 : 국민 (주권은 양도, 대표, 분할 불가능한 절대적인 권한)**
  - **입법권 : 사실상 주권과 동일하며, 역시나 국민에게 있음**
  - **집행권 : 주권 X 주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력 O 정부에 부여됨**
  - **정부 : 주권을 대표하는 주체 X 집행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역할에 그침**

91 [23-09-19]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루소는) 공공의 이익에 입각하여 국가가 운영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92 [23-09-19] ③ (홉스가 보기에 루소는)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 )

93 [23-09-19] ④ (루소가 보기에 홉스는)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임을 간과한다. ( )

94 [26-09-19] ㄴ. 홉스 · 루소 : 사회 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 )

95 [24-03-13] ㄱ. 루소 :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게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 )

96 [26-06-09] ① 루소 : 주권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 ) (윤사)

97 [26-06-09] ② 루소 : 일반 의지에 의한 강요는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한다. ( ) (윤사)

98 [24-06-19] ② 루소 :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다. ( ) (윤사)

99 [24-06-19] ③ 루소 :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 ) (윤사)

형벌 파트에서 루소는 사회 계약론 사상가로서, 개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생명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윤리 파트에서도 루소는 홉스, 로크, 루소 중 유일하게 ‘생명권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권의 양도를 주장하는 사상가에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분명히 ‘주권’과 ‘자연권’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루소는 모든 자연권의 양도를 주장하면서도, 주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상가입니다. 만약 자연권과 주권을 혼동한다면, 여기에서부터 개념의 충돌이 생길 수 있겠지요. 주의하십시오.)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루소가 보기에 일반 의지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선한 의지’입니다.

주권이 대표될 수는 없지만 대리나 대행이 될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결국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적인 매개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말뜻, 즉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루소에 따르면, 국가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므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입법권 역시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따라서 입법 행위를 포함한, 국가의 주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꼭 국민이 일일이 집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따라서 국민이 결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집행권은 정부에 있게 되며, 바로 이를 두고 주권을 ‘대리’한다 또는 ‘대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렇기 때문에 루소의 입장에서 형벌권, 즉 형벌을 집행할 권한 역시 국민이 아니라 정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시민 불복종

부정한 체제, 기본 구조, 헌법에 저항하거나 이익을 제거하는 것은 혁명(쿠데타)이지, 절대로 시민 불복종이 아닙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은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 '부정한 사회' 중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오직 '거의 정의로운 사회'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두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결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롤스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을 누가 하든, 그 주체는 중요하지 않은 셈입니다. 오직 시민 불복종을 하는 근거, 즉 시민 불복종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시민 불복종을 왜 하느냐,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무엇으로 삼느냐... 오직 시민 불복종의 '근거'만이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익 집단이나 종교 집단도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이때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시민 불복종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 혹은 종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려면,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면 될 일입니다. ① 명백한 부정의인가? ② 심각한 부정의인가? ③ 법, 제도 정책 그 자체이거나, 법, 제도, 정책에 의한 산물인가?

### 1. 시민 불복종 VS 혁명

- 시민 불복종 : 개별적인 법, 제도, 정책에 저항하는 것
- 혁명(쿠데타) : 사회를 규정하는 근본 틀(체제, 기본 구조, 헌법)에 저항하는 것

- 01 [22-06-16] ③ 롤스 :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익을 제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
- 02 [22-06-16] ④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03 [21-06-11]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 )
- 04 [20-06-12] ㄹ.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위이다. ( )
- 05 [23-03-17] ㄴ.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다. ( )

### 2. 롤스의 '사회 분류'

#### ① 정의로운 사회

-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 : 근본 틀부터 개별 법, 제도, 정책까지 모두 정의로운 사회
- 애초에 부정이가 존재하지 않아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음
- 거의(대체로) 정의로운 사회 : 근본 틀(체제, 기본 구조, 헌법)은 정의롭지만, 가끔 심각하게 부정한 법, 제도, 정책이 제정되는 사회 →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

#### ② 부정한 사회 : 사회의 근본 틀(체제, 기본 구조, 헌법)부터가 부정한 사회

-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이 없으므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음

- 06 [22-06-16] ②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한하면 성립할 수 없다. ( )
- 07 [21-11-12] ③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 ( )
- 08 [22-09-17] ㄴ. 롤스 : 매우 부정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 )
- 09 [23-11-14] ㄷ. 롤스 : 심각한 부정이가 존재하는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가? ( )
- 10 [24-09-07] ② 롤스 :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 )
- 11 [26-06-06] ② 롤스 :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 3. 롤스의 '시민 불복종'

#### ① 근거 : 다수의 정의감 = 정의의 원칙 =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

- 개인적인 신념, 이익, 종교적 교설은 절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들은 오직 시민 불복종과 일치하거나 시민 불복종을 지지하는 것만 가능

#### ② 주체 : 개인, 소수, 소수자, 집단, 다수자, 이익 집단, 종교 단체 등 모두 가능

- 주체가 누구이든 근거는 반드시 다수의 정의감이어야 함
- 다만, 이미 많은 자가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시민 불복종이 제한될 수 있음
-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존재함

#### ③ 대상 : 명백하고 심각하게 부정한 법, 제도, 정책

- 명백하고 ... :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X
-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민 불복종 가능
- ... 심각하게 부정한 ... : 사소한 부정의는 참아야 함
-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부정한 법도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 법, 제도, 정책 : 체제, 기본 구조, 헌법은 물론이고, 원칙(정의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도 애초에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님

- 12 [20-09-07] 나. 롤스 :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
- 13 [22-06-16]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 ( )
- 14 [22-06-16] ⑤ 시민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 ( )
- 15 [21-11-12] ④ 롤스 :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 )
- 16 [22-11-03] ③ 롤스 :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 )
- 17 [22-09-17] 나. 롤스 :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
- 18 [21-06-11] ② 롤스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
- 19 [23-06-12] 나. 롤스 :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
- 20 [20-11-18] ② 롤스 :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 )
- 21 [20-11-18] ⑤ 롤스 :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 )
- 22 [21-09-17]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
- 23 [21-09-17] ② 롤스 :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
- 24 [21-09-17] ⑤ 롤스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부정의에도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 ( )
- 25 [20-06-12] 다. 롤스 :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 )
- 26 [24-06-05] 라. 롤스 :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허용될 수 있는가? ( )
- 27 [24-09-07] ⑤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이다. ( )
- 28 [25-09-12] 나. 롤스 :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 )
- 29 [25-09-12] 라.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하므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 )
- 30 [25-11-18]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 ]
- 31 [25-11-18] ① 롤스 :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
- 32 [25-11-18] ② 롤스 :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33 [25-11-18] ③ 롤스 :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없다. ( )
- 34 [25-11-18] ④ 롤스 :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된다. ( )
- 35 [25-11-18] ⑤ 롤스 :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36 [26-06-06] ① 롤스 :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 )
- 37 [26-06-06] ④ 롤스 :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 )
- 38 [21-03-07] 라. 롤스 : 소수자 투표권 제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다. ( )
- 39 [23-07-12] ② 롤스 : 소수자의 재산 소유권이 침해되면 시민 불복종이 전개될 수 있다. ( )
- 40 [24-03-04] 다. 롤스 :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
- 41 [21-07-17]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양심에 기반을 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
- 42 [21-04-14] 다. 롤스 :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정의관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청원이다. ( )
- 43 [21-04-14] 라. 롤스 :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44 [20-04-07] ① 롤스 :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우리, 앞의 분배 정의 파트에서 롤스가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대해 배웠던 게 기억이 나나요? 바로 지금이 그것을 써먹을 때입니다!

#### 4. 싱어의 ‘시민 불복종’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첫째가 일반적인 경우로서, **다수의 진정한 결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다수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둘째는 **다수의 진정한 결정이 반영되었지만 그 결정이 심각하게 그릇되어 보이는 경우, 다수의 결정을 거부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싱어는 다수의 결정이 일반적으로는 옳지만 때로는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다수의 결정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책, 혹은 다수의 정의관 그 자체에 대한 시민 불복종도 가능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이다.

**결국 싱어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질 수도,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지므로, 싱어는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하며,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거나 위협하려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②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으로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파괴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 감소'의 정도를 고려하고, 시민 불복종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의 정도를 저울질해 봄으로써 시민 불복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③ 롤스에 따르면 부정의한 사회에는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이 없으므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면, 시민 불복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④ 롤스에 따르면 부정의가 명백하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 그 부정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싱어에 따르면 어떤 부정의한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했을 때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 같다면, 시민 불복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⑥ 이를 두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라는 말로, 싱어는 '시민 불복종 주체는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⑦ 롤스의 경우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 항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에 대한 강제나 위협이 아닙니다.

- 45 [23-11-14] 르. 싱어 :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 )
- 46 [24-06-05] 나.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 )
- 47 [26-09-09] 르. 싱어 :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 )
- 48 [23-07-12] ④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설득하기보다 강제하기 위한 시도이다. ( )

## 5. 롤스 VS 싱어

### — 공통점

- ①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 비폭력,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
- ②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야 함(특히 불행한 결과를)**
- ③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함)**
- ④ **모든 부정의한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⑤ **시민 불복종 행위가 정의로운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⑥ **시민 불복종 주체는 법체계 전반이나 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음**
- ⑦ **시민 불복종 그 자체는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음**

### — 차이점

- ① **다수의 정의관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가?**
  - 롤스 : 다수의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자 근거이므로, 다수의 정의관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싱어 : 예외적으로 다수의 정의관이 심각하게 그릇되어 보이는 경우, 다수의 정의관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함
- ② **다수의 이익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목적이 될 수 있는가?**
  - 롤스 : 이익이 아닌 오직 정의만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목적이 될 수 있음
  - 싱어 : (공리주의 입장에서) 다수의 이익 증진이 곧 정의이므로, 가능함
- ③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가?**
  -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숙고'를 강제(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싱어 : 시민 불복종은 일반적으로 다수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님

- 49 [22-09-17] 드. 싱어 : 시민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 )
- 50 [22-09-17] 르. 롤스 · 싱어 :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
- 51 [21-06-11] ④ 싱어 :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
- 52 [21-06-11] ⑤ 롤스 · 싱어 :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
- 53 [23-06-12] ㄱ.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불법 행위이지만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 )
- 54 [23-09-08] 르. 싱어 · 롤스 :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
- 55 [24-06-05] ㄱ.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 )
- 56 [24-09-07]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 )
- 57 [25-06-14] ㄱ. 롤스 · 싱어 :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 불복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 )
- 58 [25-09-12] 드. 롤스 :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 )
- 59 [26-06-06] ③ 롤스 :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 )
- 60 [22-03-19] ①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위법 행위인가? ( )
- 61 [22-03-19] ③ 롤스 · 싱어 :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는가? ( )
- 62 [23-07-12] ③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보편적인 법치 원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 )
- 63 [22-04-18] ⑤ 롤스 ·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되어야 한다. ( )
- 64 [24-07-07] ㄱ. 싱어 : 시민 불복종은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 )
- 65 [22-10-19] 드. 싱어 :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시민 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 ( )

## 6. 시민 불복종 파트 사상가들(소로, 롤스, 싱어)의 공통점

- ①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를 개선하고 정의를 증진하는 데 있음
- ②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는 옳지만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위법 행위임**
- ③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적 신념을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임**
- ④ 시민 불복종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66 [20-09-07] ㄹ. 롤스 · 소로 :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 )

67 [24-11-09] ㄴ.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 )

68 [21-11-12] ⑤ 싱어 ·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 )

69 [26-09-09] ㄴ. 롤스 : 시민 불복종은 민주 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 )

70 [26-09-09] ㄷ. 롤스 : 시민 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 )

71 [20-03-12] ㄹ. 롤스 :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인가? ( )

## Step 2. 연계 교재 고난도 제시문

수능 전에 이 제시문들은 꼭 보고 들어가자!  
2026학년도 수능특강·수능완성 고난도 제시문 모음!

덕을 논하여 서열을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의 직책을 주며, 각자 사람마다 그 일을 수행하여 각각 그 마땅한 데를 얻게 하여 상질 현자는 삼공이 되도록 하고, 버금가는 현자는 제후가 되도록 하며, 하질 현자는 사대부가 되도록 함이 바로 끌어 쓰는 방법이다. ... (중략) ... 그러므로 천자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을 발휘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에 편안히 즐기려 하는 것은 바로 누구나 다 같은 것이다.

①

모든 일에 신의 소명(召命)이 바른 활동의 시작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 신의 소명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도(正道)를 따라 신 앞에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때로는 무언가 칭찬받을 만하게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행하는 일은 신의 보좌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②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아래와 위의 차이가 있다. 권세나 지위가 동등하고 욕심과 싫어함이 같되 물건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투면 반드시 혼란해지고 혼란하면 궁해진다. 선왕(先王)은 그 혼란이 싫어 예의 법도를 마련하여 그것으로 신분을 가르고 빈부 귀천의 차등을 두었다.

③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 공자는 “인자(仁者)는 인(仁)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知者)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말했다. 나는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知者)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하겠다. 사람들은 재물에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에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④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서로 달라서 저마다 다른 일을 하는 데에 적합하다. 각각의 것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성향에 따라 적기에 하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대할 때이다. … (중략) … 장인이냐 상인이냐 재화와 같은 것의 힘을 빌려 방위자가 되거나 방위자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가 된다면, 그것이 나라에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세 계층의 사람이 서로 참견하거나 일을 바꾸는 것은 이 나라에 해악이자 악행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①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차례를 기다릴 것 없이 등용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은 잠시의 기다림 없이 파면하며, 극악한 사람은 가르치기 전에 처벌하고, 보통의 사람은 형벌을 사용하기 전에 교화 시킨다. 신분이 아직 정해지기 이전에도 종묘에는 아버지 자리와 아들 자리의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 비록 임금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의에 합당하지 못하면 곧 서민으로 신분을 낮추고, 비록 서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학문을 쌓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예의에 부합된다면 재상이나 사대부로 신분을 올린다.

②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쓰고[勞心] 어떤 사람들은 힘을 쓴다[勞力]. 마음을 쓰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며,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이 타인을 먹이고 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먹게 되는 것이 천하에 통용되는 이치이다.

③

각 사람은 국가와 관련된 일 가운데 자기 성향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한다. 따라서 세 계층 간 직무를 교환하는 것은 국가에 해악이자 악행이 된다. 나라가 절제 있고 용기 있으며, 지혜로운 것도 바로 이들 세 부류가 처한 상이한 처지와 상이한 습성으로 인한 것이다.

④

명분(名分)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바르지 않고, 말이 바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고,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게 적절하지 않고,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명분을 바로잡으면 반드시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반드시 행함이 가능하니, 군자는 말에 있어 구차한 것이 없을 뿐이다.

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 즉 소명(召命)은 신이 지정해 주신 일종의 초소(哨所)와도 같아서,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거기서 벗어나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해 살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그것을 근거로 신 앞에서 판단받는다.

②

인간은 동물과 달리 욕구 충족을 위해 합목적적 활동 안에서 노동 수단을 통해 자연 등의 노동 대상을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변형한다. 동시에 인간은 노동 과정에서 자신의 본질도 변화시켜, 그 본질에 잠재된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부를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의 생산의 힘과 범위가 증대될수록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가 상품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그는 더 값싼 상품이 된다.

③

현세적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는 모든 힘을 다하여 소유의 자연적 향락을 반대하였다. 이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재화의 취득을 주저하게 만든 전통적인 윤리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 체계적이고 현세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적 수단으로 여겼다.

④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최상은 봉급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을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한 필의 말로 조출하게 가는 것이니, 이것이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최하는 무릇 규례(規例)가 된 것이 라면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지만, 규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먼저 시작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최상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하의 경우는 옛날 같으면 형벌에 처했을 것입니다.

①

임금의 도(道)는 많은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다. 상인과 공인은 줄이고, 농부는 늘리며, 도둑을 없애고 간사한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다. 또 예(禮)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분계[分]를 마련 하여 차등을 두어야 한다.

②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 ... (중략) ...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인류 전체에서 악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③

대인(大人)이 할 일이 있고 소인(小人)이 할 일이 있다. 또한 사람에게서는 백공(百工)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 길에서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勞心],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勞力].

④

농부는 밭을 나누어 경작하고, 상인은 재화를 나누어 판매하며, 공인은 일을 나누어 물건을 만들고, 사대부는 관직을 나누어 정사(政事)를 돌본다. 제후는 땅을 나누어 지키고, 삼공은 국사를 총괄하여 의논하니, 천자는 자기 자신의 일만 하면 된다. 안과 밖이 이와 같으니 천하에 공평하게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역대 제왕이 한결같이 행한 일이고, 예의[禮]의 큰 원칙이다.

①

분업은 노동 생산력을 높이고 사회의 부를 높이지만, 노동자를 기계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자본의 집적을 가져오고 동시에 사회의 풍요로움을 증대시키는 반면, 노동자로 하여금 자본가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고 노동자를 더욱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는다. 노동자는 상품을 더 많이 창조하면 창조할수록 더욱더 값싼 상품이 된다.

②

국가 안의 세 계층이 각기 그 자신의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는 정의로워진다. 또한 철학자들이 나라의 군주로서 다스리거나 현재의 군주 또는 최고 권력자들로 불리는 이들이 진실로 충분히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③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지만 변함없는 마음[恒心]이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변함없는 마음이 없어진다. 진실로 변함없는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간사한 짓을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죄에 빠지고 난 뒤에 그에 따라서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여 잡는 것이다. 어찌 어진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여 잡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충분히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충분히 기를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항상 배부르며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러한 뒤에 그들을 인도하여 선(善)으로 가게 한다. 그러므로 백성이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다.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부를 생산하면 할수록, 그 생산의 힘과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상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은 그만큼 더 값싼 상품이 된다. 사물 세계의 가치 증대에 정비례해서 인간 세계의 가치 저하가 심해진다. 노동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다. 노동은 자기 자신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한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으로부터 우선 자연을 소외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으로부터 그의 본질을 소외시키고 자기 활동이나 자유로운 활동을 수단으로 격하시킨다.

①

통치자들은 시련을 겪더라도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판명되어야 하고, 마치 불 속에서 시험을 거친 금처럼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수호자로 임명되어야 할 자는 철학자들이다.

②

재물은 누구나 욕심내는 것이지만 명예와 같은 더 큰 목표를 위해 재물을 버릴 수 있다.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있고 생각이 깊은 자라면 반드시 청렴한 관리가 될 것이니, 청렴한 것은 천하의 큰 장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수령이 청렴하기만 하고 치밀하지 못하여 오직 재물을 내놓는 것에만 힘을 쓰거나, 재물을 쓰고도 실효가 없다면 이는 잘못이다. 만약 큰 재물이 있으면 이것으로 논밭을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백성의 노동을 덜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도록 하는 등 실리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③

신은 우리를 만들면서 능히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을 섞었다.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신은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섞었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게 된다. 하지만 모두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때로는 금의 부모로부터 은의 자식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와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④



목민관이 탐욕을 채우려면 아전과 더불어 일을 꾸미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전과 그 이득을 나누게 되며, 아전과 이득을 나누게 되면 백성의 고혈이 마르게 된다. 따라서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①

한 사회적 정책의 목적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승인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윤리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실용적 문제를 제기한다. 현명한 지성이 있는 사회라면 위험한 정치적 도구들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 이성은 이를 최고의 목적을 위한 봉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합리적·도덕적 세력에 가장 잘 어울리고 위험성이 가장 적은 형태의 강제력을 선택할 것이다. 도덕적 이성은 어떻게 강제력의 희생이 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②

자비심과 사회적 선의지는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권리나 욕망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욕망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회 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은 모두 일정한 강제성을 요구한다. 어떠한 국가도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할 수는 없다. 또한 정치는 인간 생활의 윤리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이 상호 침투하여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다.

③

사회적 지성은 일반적으로 점차 증대해 가면서 사회적 특권 세력의 요구를 억제하고 비특권 계층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 내에서 이성의 힘은 완전한 힘의 평등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 다만 목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따름이다. 도덕적 이성은 어떻게 강제력의 희생이 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④

개인으로서 인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다. 반면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①

오늘날의 문화는 집단 이기주의가 갖는 힘과 범위, 그리고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을 통해 관계를 확립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집단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즉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②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합의 대상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이다.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부르고자 한다.

③

정치적 평등주의의 목표는 지배가 없는 사회, 즉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결코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혹은 그렇게 이용될 수도 없는 사회이다. 이것은 다양한 차이를 철폐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배의 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서로 평등하다.

④

복합 평등 체제는 전제와 정반대가 된다. 복합 평등이란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략) ... 어떤 사회적 가치  $x$ 도,  $x$ 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 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 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①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선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이다. 자유 세계에서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②

특수적 정의의 하나의 유형은 정치적 체제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나 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의 분배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한 몫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것은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다면, 그들이 동등한 몫을 받지 않는 것이다.

③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된다. 원초적 입장의 여건이 주어질 경우 도덕적 인격으로서, 즉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인 개인들에게 이러한 최초의 상황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그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만이 적절하다. 또한 모든 사회적 가치 그리고 모든 개별 사회의 분배 영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라도 대체로 알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 종종 침해되며, 가치는 침탈되고 영역은 침범된다.

①

우리가 지향하는 다원적 평등주의 사회는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해도 불평등이 전환 과정을 거치며 증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원적 평등은 한 영역 안에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과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②

우리는 정의의 일차적 주제로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기본 구조는 시민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지위와 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능한 기회를 이용하는 능력에서 더 큰 불평등을 낳는 경향을 끊임없이 완화시켜야 한다.

③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기업가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노동자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사회적 부정의가 제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최초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오직 기대치의 차등이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이다.

④

개인들의 자연적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들은 자신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개인들이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경우 정의로운 과정을 거쳐 이로부터 유출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소유 권리를 갖는다.

①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정의의 원칙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②

자본주의하에서 자신을 조금씩 팔아 치워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상거래의 품목과 같은 하나의 상품이며, 이로 인해 온갖 경쟁과 시장의 흥망성쇠에 내맡겨져 있다.

③

소유 권리에 의거한 견해를 통상적 형식으로 제시하면, ‘각 사람이 하고자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로부터 각 사람에게, 그가 그 자신을 위해 만든 것 그리고 타인들이 그를 위해 하기를 선택하는 바의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전에 주어졌으나 아직 소비되지 않았던 것 중에서 또는 양도되지 않은 것 중에서 그들이 그에게 주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이다. 이를 간략한 어구로 표현하면 ‘그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로부터, 그들이 선택된 바에 따라 각자에게’이다.

④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는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①

차등의 원칙은 진행 중인 과정이 어떤 결과를 맺어야 할지를 규정하고 이 과정이 준거해야 할 외적인 정형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부된다. 차등의 원칙은 특별히 강한 종류의 정형적 중국 상태적 원리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②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기본 구조의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한다.

③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다. 가치는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평가되지 않는다. 모든 사회적 가치 혹은 가치의 모든 집합은 말 그대로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만이 적절하다. 돈은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하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시장을 이해한다면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판매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살 수 있어야 한다.

④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성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보는 방식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

①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포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②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③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는 효과적인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④

부정의한 사람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고 부정의한 것은 동등하지 않은 것이기에 동등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 어떤 중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중간이 바로 동등한 것이다. 어떤 행위이든 더 많음과 더 적음이 있는 곳에는 동등한 것 또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부정의한 것이 동등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의로운 것은 동등한 것이다. 동등한 것은 중간이므로 정의로운 것은 어떤 중간일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다.

①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는 타인들의 행동을 전유(專有)한다. 어떤 사람의 노동의 결과를 점유하는 것은 그로부터 시간을 점유하고 그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지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②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적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노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일차적인 생활 욕구가 된다. 그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라고 쓸 수 있다.

③

모든 현실적 상황이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두 원리, 즉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분배에서의 정의의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④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직관적 생각은 그것이 정의의 제1원칙 자체를 적절히 규정된 최초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합리적 인간들이 그들의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평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원칙이다.

①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에 대한 교정의 원리에 따라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만약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②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한 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③

정의로운 분배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④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중략) …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①

처벌 그 자체는 여전히 비용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처벌 유형에서 절제성의 완벽함은, 처벌이 처벌 받는 개인에게 아무런 과도한 고통도 생겨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처벌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어떤 다른 개인에게 쾌락을 창출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달성된다.

②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이 목적이다. 목적을 바라는 자는 얼마간의 위험, 얼마간의 손해를 생각한다. 남의 희생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 (중략) …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모두 그 범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된다. … (중략) … 죄인을 재판하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가 사회 계약을 맺으며, 따라서 이제 그는 국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과 선고이다.

③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보다 작다면, 그런 행위는 처벌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질 것이고, 그런 처벌은 비효과적이게 된다.

④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 (중략) ... 처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 (중략) ... 막아야 할 피해가 어떤 것이든 간에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막아 내야 한다.

①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 중에 석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득적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②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살인범은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사형시켜야 한다. 시민 사회가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 한다.

③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범죄의 진정한 척도가 범죄자의 의사에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공통적 효용, 즉 공리가 인간적 정의의 기초이다. ... (중략) ...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 (중략) ... 사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그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인 것이다.

④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①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사형은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일 뿐이다.

②

형벌의 부담과 범죄의 결과는 일반인에게는 가능한 한 효과적이어야 하되, 범죄자에게는 가능한 한 관대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사회 계약 당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최소의 해악만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③

사형이 주는 인상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급속한 망각의 힘을 이겨 낼 수 없다. 망각이란 인간의 속성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유롭고 평온한 체제하에서는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인상보다는 약하더라도 빈번한 인상을 제공해야 한다.

④

사형은 사람들에게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해하다. 형벌의 잔혹성은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強度)만을 가져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②

모든 범죄자는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신의 죄로 인해 조국의 배신자가 된다. 범법자를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시민이라기보다 적으로서 처형하는 것이다. 그 재판 과정과 판결은 그가 사회 계약을 파괴했으며 그로 인해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며 선언이다.

③

형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것이 확실성과 근접성 측면에서 지니는 결함을 고려해야 한다. 형량을 조정할 때 형벌을 무익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

④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살인에 대한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①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은 중죄를 저지름으로써 조국의 반역자가 된다.

②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목격자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비슷한 짓을 하면, 오랫동안 저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자주 반복되기에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 멀찍이서 흐릿하게 보는 죽음의 공포보다 이런 억제책이 훨씬 강력하다.

③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면 오직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입법자의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바람직한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위법 행위도 범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④

형벌은 범죄자의 행위와 그 외 일반인의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 형벌은 최대 행복을 위해 오직 그것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①

형벌의 법칙은 정언 명령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인간이 지상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한다. 공적 정의의 원리는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②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에게는 수단이 필요하며 그 수단에는 일정한 위험과 희생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은 더 이상 법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위험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군주가 그에게 “국가를 위해 당신이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죽어야 한다. 오직 그런 조건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으며, 그의 생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국가에서 조건부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③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공동체는 가장 으뜸가는 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으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이전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이고 완전한 공동체이며,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한다.

④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잠재적 충동이 있다.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이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로 전락하고 만다. ... (중략) ... 국가는 분명 자연의 산물이고 개인에 우선한다.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거나, 자급자족하여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국가의 부분이 아니며,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①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 (중략) ...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내가 듣자 하니 ‘나라를 경영하는[有] 자와 집을 경영하는 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오직 분배가 고르지 않은 것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것을 근심한다.’ 했다. 분배가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화목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 그러므로 먼 나라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덕[文德]을 닦아서 스스로 찾아오게 하며 그들이 찾아오면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③

우리는 저마다 개인의 인격과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라는 가장 우월한 지배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원 각각을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이 공적인 인격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고 불린다.

④

어진 정치를 실행하려면 덕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를 존중해 덕을 지닌 현자가 합당한 지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직책에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없어 지거든 그때에 이르러서 정치와 형벌을 밝게 시행하면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다.

①

어떤 강제력, 즉 코먼웰스(국가)가 없는 곳에는 소유권도 없고 부정의도 없다.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된다. ... (중략) ...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②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신탁(信託)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 행동하게 되면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최고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③

인간 본성에 호오(好惡)의 감정이 있어서 상벌이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상벌이 효력을 지닐 수 있어서 금령과 명령이 확립될 수 있고 치국의 도는 완비된다. 군주가 권병[柄]을 장악하고 위세[勢]에 처하기 때문에 명령은 시행되고 금령은 지켜진다.

④

사람마다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에게 자신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 (중략) ... 우리는 저마다 개인의 인격과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라는 가장 우월한 지배 아래 둔다. 이 결합 행위가 성립하는 즉시 계약자인 개인들을 대신하여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다. ... (중략) ... 공공의 행복에 따라서 국가의 여러 힘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반 의지뿐이다. 주권이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주권은 결코 양도할 수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게 국가의 이익을 지향한다.

①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따라서 정치 사회는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한 곳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②

선의 이데아를 보게 되는 자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고서, 저마다 여생 동안 번갈아 가면서 나라와 개개인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이들은 여생의 대부분을 철학으로 소일하지만 차례가 오면 나라의 일로 수고를 하며, 저마다 나라를 위해 통치자로도 되는데,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훌륭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③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해도 좋다는 이성의 계율이 등장한다.

④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이다. 권력이 문명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하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든지, 그것이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심지어 정당하다고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

①

자연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게 된다.

②

자연법의 집행권을 모든 사람이 포기하여 그것을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한다. 개개인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 간에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다.

③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兼愛]하게 되면 곧 다스려지고, 모두가 미워하면 곧 어지러워진다. 대국이 소국을 공략하고,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고, 교활한 자가 우직한 자를 속이는 천하의 해악은 서로 사랑하는 데서 발생하지 않았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발생하였다.

④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계산하는 마음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상벌의 도(道)가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성인(聖人)은 국가를 통치할 때 남이 자신에게 선행할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남이 자신에게 감히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쪽을 채택한다.

①

인간의 독특한 점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또는 다른 유사한 성질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공통되므로 공동체가 형성된다.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본성적 충동이 있는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된다. 하지만 인간은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나쁜 동물로 전락하고 만다. 인간은 덕이 없으면 가장 추악하고 야만스러운 존재이며 탐욕과 무절제가 다른 동물보다 더 강하다. 인간은 국가의 정의를 통해 구원받는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 공동체가 실현하기 때문이다.

②

사회 계약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신(人身) 및 모든 능력과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둔다는 데 있다. 이때 그러한 하나의 결합체를 구성하는 성원들인 우리 모두는 각자를 전체에서 떼어 낼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사회 계약을 하는 순간 각 계약자의 사적인 인격은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의 도덕적이고도 집합적인 단체, 즉 공적 인격이 형성된다.

③

무력으로써 어진 정치를 꾸미는 것은 패도(霸道)이다. 패도를 칭하려면 반드시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덕으로써 어진 정치를 베푸는 것은 왕도(王道)이다. 왕도를 펴는 데는 꼭 나라가 커야 할 필요는 없다.

④

자유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보위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각 개인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되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①

힘을 가지고 인(仁)을 빙자하는 것을 패도(霸道)라고 하는 것이니, 패자는 반드시 대국(大國)을 소유하고 있다. 덕(德)을 가지고 인을 행하는 것을 왕도(王道)라고 하는 것이니, 왕도 정치는 대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넉넉하지 못하여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속마음에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다.

②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할 수 없다. 입법권은 단지 위임 받은 권력에 불과하며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행동할 때 인민은 입법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는 자는 관리로서 악을 저지르는 자이다. 인인(仁人)이란 자는 공공의 재물을 손상시키는 자이다. 군자(君子)란 자는 부리기 어려운 민(民)이다. 덕(德)이 있는 자란 법 제도를 깨뜨리는 자이다. 현명한 군주는 상벌의 권위를 가지고 법(法)을 한결같이 행사하고 법·세(勢)·술(術)을 병용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④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인을 노인으로 모시고 그럼으로써 남의 노인에게 그것이 미치도록 하고, 나의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고 그럼으로써 남의 어린이에게 그것이 미치도록 하여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네의 편지는 잘 보았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분별하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만 사랑할 뿐 남의 몸은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자신의 몸을 사용해 남의 몸을 해치는 데 거리낌이 없게 된다네. 그러기에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들판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집안의 가장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빼앗게 될 것이며, 임금과 신하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롭거나 충성스럽지 않게 될 것이네. 또한 천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강한 자가 반드시 약한 자를 잡아 누르고 부유한 자가 반드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게 된다네. 이처럼 천하의 모든 재난과 찬탈, 그리고 원한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니, 서로를 두루 사랑하고[兼相愛] 서로를 이롭게 한다면[交相利] 천하가 안정될 것이며 이것이 곧 하늘이 바라는 것이라네.

①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전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다. 전쟁 상태에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 적이 되므로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다.

②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부재하여 인간의 생명, 자유, 자산의 향유가 불확실하다. 인간이 국가로 결속해서 자신을 정부 아래 두는 목적은 자신의 소유를 보존하는 것이다.

③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이 발견한 일반적 원칙이다. 자연법에 의해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④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통의 권력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의지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 한다.

①

국가는 일종의 동등한 자들의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시민들의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것은 행복이며, 행복은 덕의 구현과 완전한 실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만 국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가라면 구성원들의 탁월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동맹체와 공간적으로만 차이가 나는 동맹체가 되고 맙니다. 국가는 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며, 상호 간에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가족과 씨족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입니다.

②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바로 그 법인 이성인 전체 인류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친다.

③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에 따라 누구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④

자연 상태에서부터 시민 상태로의 이행은 인간의 행위에 과거에는 없었던 도덕성을 부여한다. 일반 의지의 지배를 받는 사회 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면서도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얻게 된다.

①

자연 상태는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으며,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전쟁 상태이다. 인간이 전쟁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생겨난다.

②

입법자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코먼웰스만이 우리가 법이라 부르는 여러 규칙을 정하고, 그것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다. 코먼웰스는 입법자이다. 주권자야말로 유일한 입법자이다.

③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와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 (중략) ... 그리고 공동체의 물리력을 국내에서는 오직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고 공동체의 안보를 침입이나 침략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④

국가는 자연의 창조물이며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다. 모든 공동체 중에서 으뜸가는 국가는 개인의 생존의 차원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좋은 삶의 차원을 충족할 수 있는 자족적인 공동체이다.

①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위적인 신의 계약[信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만인의 상호 신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은 주권자 측에서 파기할 수 없다.

②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이와 같은 법에 대한 충실은 다수자로 하여금 그 행위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또한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은 우리의 성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양심적이라는 것을 다른 이에게 확신시키거나 심지어 우리 앞에서조차도 이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③

시민 불복종은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대한 호소인 데 반해, 양심적 거부는 공동체의 신념에 호소하는 행위가 아니며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④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 (종락) ... 노예 제도 폐지론자는 몸으로나 재산으로나 매사추세츠주 정부를 지원하는 일을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

①

시민 불복종 문제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게서만 생겨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 원칙의 성격 및 한계와 관련된 것이다.

②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

③

나는 알고 있다. 단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라도 노예 소유하기를 그만두고 실제로 노예 제도의 방조자 입장에서 물러나며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다.

④

어느 정도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강력한 입헌 체제가 존재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체제를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로 인해 부정의한 법도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부정되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는 않는다.

①

인간의 의무가 어떤 악을 근절하는 데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는 최소한 그 악과 관계를 끊을 의무가 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②

시민 불복종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공공적 정의관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인 침해는 굴종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③

어떤 소수자에게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 혹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주할 권리가 거절된다면 이런 부정의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④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결정이 다수의 견해의 진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심각하게 그릇된 일일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①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시민 불복종은 결과주의적 관점에 의해 정당화되며,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된 나라일수록 더 쉽게 정당화된다.

②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 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③

사회가 동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 체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시민 불복종은 비록 그 정의(定義)로 보서는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④

시민 불복종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①

시민 불복종 이론은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중략) ...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 (중략) ...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 Step 3. 고난도 O/X 선지 테스트

2026학년도 수능특강·수능완성 심화 개념 전격 반영!  
평가원 기출 소스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덤으로 얻어가자!

|                                                            |           |
|------------------------------------------------------------|-----------|
| (1) 맹자는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2) 순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본다.           | ( ○ / × ) |
| (3) 순자에 따르면 예(禮)로써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 ○ / × ) |
| (4) 플라톤은 후천적인 교육이 아니라 각자 타고난 소질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플라톤에 따르면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덕(德)을 실현할 수 있다.     | ( ○ / × ) |
| (6) 중세 그리스도교에서는 노동이 원죄에 대한 벌로서 신이 부과한 것이라고 본다.             | ( ○ / × ) |
| (7) 중세 그리스도교에 따르면 인간은 속죄의 차원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 ( ○ / × ) |
| (8)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9)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이 소외 현상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본다.            | ( ○ / × ) |
| (10) 플라톤은 계층 사이의 참견과 간섭이 국가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M E M O —

|                                                                    |           |
|--------------------------------------------------------------------|-----------|
| (1) 순자는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도라고 주장한다.      | ( ○ / × ) |
| (2)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 본분에 맞는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 ( ○ / × ) |
| (3) 맹자에 따르면 군주는 백성 각자가 모든 재화를 자급자족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 ( ○ / × ) |
| (4) 맹자는 통치의 궁극적 목적이 백성이 경제적 안정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칼뱅은 자신의 직업 생활에 충실한 모든 사람은 신에게 인정받을 만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칼뱅에 따르면 내세의 구원은 직업적 성공에 대한 신의 축복이다.                            | ( ○ / × ) |
| (7) 칼뱅은 신이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삶의 양식을 지정한다고 본다.                           | ( ○ / × ) |
| (8) 칼뱅은 근면한 직업 활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칼뱅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 활동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 ○ / × ) |
| (10) 플라톤에 따르면 각자가 저마다 하나의 일[業]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 ( ○ / × ) |

#### MEMO

|                                                                    |           |
|--------------------------------------------------------------------|-----------|
| (1) 플라톤은 각자의 직업 활동이 구성원 전체를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플라톤에 따르면 계층 간 직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국가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 ( ○ / × ) |
| (3) 순자에 따르면 선왕(先王)은 사람들 사이의 혼란과 다툼을 막기 위해 빈부 귀천의 차등을 없애는 법도를 만들었다. | ( ○ / × ) |
| (4) 순자는 백성이 다양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5) 순자는 누구나 예(禮)를 갖추어 실천하면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6) 정약용은 목민관이 청렴함을 이로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 ( ○ / × ) |
| (8) 정약용은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고는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9)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하지 않을 때 자기 본질을 실현하게 된다고 본다.                        | ( ○ / × ) |
| (10) 마르크스는 인간이 분업화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게 된다고 본다.              | ( ○ / × ) |

#### — M E M O —

|                                                     |           |
|-----------------------------------------------------|-----------|
| (1) 순자는 예(禮)에 따라 사람들의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2) 순자는 통치자가 덕(德)이 아닌 법에 기반을 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3) 플라톤에 따르면 세 계층의 습성이 상이한 경우 나라 전체의 조화는 훼손된다.      | ( ○ / × ) |
| (4) 맹자는 통치자가 백성이 기뻐하며 복종하도록 통치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맹자에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과 소인(小人)의 일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 ○ / × ) |
| (6) 플라톤은 장인이 다른 계층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플라톤에 따르면 통치자는 국가 전체의 선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8) 맹자와 플라톤 모두 통치자가 덕(德)을 갖추고 다른 구성원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9) 공자는 통치자가 올바르게 행하면 명령 없이도 백성이 따르게 된다고 본다.        | ( ○ / × ) |
| (10) 칼뱅에 따르면 소명에 따른 노동을 통해 축적한 부는 신의 축복이자 선물이다.     | ( ○ / × ) |

#### MEMO

|                                                          |           |
|----------------------------------------------------------|-----------|
| (1) 칼뱅에 따르면 신은 인간이 모든 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각자에게 소명을 주었다.      | ( ○ / × ) |
| (2)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이 합리적인 재산 축적이 아니라 과도한 소비를 반대하였다고 본다.      | ( ○ / × ) |
| (3)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는 부를 목적 그 자체로 추구하는 것을 긍정하였다.    | ( ○ / × ) |
| (4) 칼뱅은 신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자에게 소명으로서 직업을 지정하였다고 본다.        | ( ○ / × ) |
| (5)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6)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함으로써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7)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 ( ○ / × ) |
| (8) 마르크스는 모든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가 이상 사회라고 본다.  | ( ○ / × ) |
| (9) 맹자에 따르면 선비와 달리 백성은 항산(恒産)이 있어도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없다.     | ( ○ / × ) |
| (10) 정약용에 따르면 청렴은 목민관으로서 행할 모든 선(善)의 원천이자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 ( ○ / × ) |

#### MEMO

|                                                          |           |
|----------------------------------------------------------|-----------|
| (1) 정약봉에 따르면 부정한 목민관이 되는 까닭은 지혜가 부족하고 사려가 얕기 때문이다.       | ( ○ / × ) |
| (2) 정약봉에 따르면 선(善)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목민관은 덕(德)이 아니라 법령에 따르고자 한다. | ( ○ / × ) |
| (3) 순자는 덕(德)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칼뱅은 신이 각 사람에게 부여한 삶의 양태에 따라 직업이 분담된다고 본다.            | ( ○ / × ) |
| (5) 베버에 따르면 서구 근대 자본주의 발달의 뿌리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있다.            | ( ○ / × ) |
| (6)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티즘은 부의 추구를 도덕적으로 금지하였다.                 | ( ○ / × ) |
| (7)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언제나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을 한다고 보았다.          | ( ○ / × ) |
| (8)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노동자의 상품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 ( ○ / × ) |
| (9)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 비로소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연대가 실현된다고 본다.    | ( ○ / × ) |
| (10)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연합체인 국가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 ( ○ / × ) |

#### MEMO

|                                                                            |           |
|----------------------------------------------------------------------------|-----------|
| (1) 정약용은 청렴한 목민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높고 생각이 깊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2)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은 선(善)의 실천을 좋아함이 아닌 마땅한 의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 ○ / × ) |
| (3) 맹자는 백성의 도덕적 일탈이 군주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정약용은 목민관 본연의 의무는 청렴이며, 목민관의 으뜸가는 의무는 관청의 비용을 절약해서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5) 플라톤에 따르면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혜를 충분히 사랑해야 한다. | ( ○ / × ) |
| (6) 플라톤과 달리 공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 ○ / × ) |
| (7) 공자와 플라톤 모두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덕(德)에 기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 ( ○ / × ) |
| (8) 맹자에 따르면 선비는 백성과 달리 항산(恒産)이 없어도 본심(本心)을 잃지 않을 수 있다.                     | ( ○ / × ) |
| (9) 맹자는 사회 구성원이 자기 자신의 직분에 부합하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10) 맹자는 통치자의 역할이 백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 보장으로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맹자에 따르면 사회적 역할의 분업을 통해 구성원 간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 ○ / × ) |
| (2) 순자는 덕(德)이 두터운 사람은 나아가 벼슬을 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는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 ( ○ / × ) |
| (3) 순자는 사회 구성원 간의 분업을 통해 올바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4) 순자는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예(禮)가 아니라 개인의 덕(德)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순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예(禮)를 통해 백성이 갖고 있는 무분별한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 ( ○ / × ) |
| (6) 마르크스는 분업이 노동 생산력을 저해하고 사회의 부를 감소시킨다고 본다.                   | ( ○ / × ) |
| (7)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은 언제나 노동자를 기계로 전락시킨다.                 | ( ○ / × ) |
| (8)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이 자본의 집적을 불러오고 사회의 풍요로움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분업 체계는 노동자의 자율성을 증진한다.                     | ( ○ / × ) |
| (10)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노동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칼뱅은 세속적인 직업 생활을 통해서도 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2) 칼뱅에 따르면 신의 뜻에 따라 여러 직업 간의 귀천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 ( ○ / × ) |
| (3) 마르크스와 칼뱅 모두 노동의 본질적인 목적을 물질적 이윤의 획득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 × ) |
| (4) 플라톤은 생산자 계층의 경우 통치자 계층과 달리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5)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선(善)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의로운 사회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 | ( ○ / × ) |
| (6) 플라톤은 개인이 부모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의 방위자는 용기뿐만 아니라 다른 덕도 갖추고 있다고 본다.             | ( ○ / × ) |
| (8)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에게는 치밀하거나 정책의 실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청렴한 것만이 중요하다.  | ( ○ / × ) |
| (9) 정약용은 목민관이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정약용은 목민관이 곤궁한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정약용은 목민관이 먼저 덕(德)을 갖춘 후에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2) 정약용에 따르면 자애로운 목민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하고 절용(節用)해야 한다.      | ( ○ / × ) |
| (3) 정약용은 애민(愛民) 정신의 실현을 위해 목민관의 사적인 재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플라톤은 사회의 세 계층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덕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플라톤에 따르면 절제의 덕은 누가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의 덕이다.          | ( ○ / × ) |
| (6) 플라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치자의 결정에 반목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7) 플라톤은 절제의 덕이 모든 구성원이 아닌 통치자 계층만의 의견 일치로 내포한다고 본다.      | ( ○ / × ) |
| (8) 맹자는 백성의 도덕적 인도가 아니라 백성의 생업 보장이 군주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9)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의 본질은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에 있다.                | ( ○ / × ) |
| (10) 칼뱅은 직업 노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노동의 본질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분업 체계하에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정약용은 공직자가 친척이 처한 어려움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맹자는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부양을 받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도리라고 본다.          | ( ○ / × ) |
| (4) 순자는 덕(德)의 유무를 검토하여 서열을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벼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플라톤은 이데아에 관한 인식과 지혜를 지닌 철학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순자는 예의(禮義)를 숭상하고 법도를 이름으로써 통치자가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7) 정약용은 목민관이 기존의 전통과 관례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 ○ / × ) |
| (8)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은 절용(節用)에 힘쓰고 재물을 실효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 ( ○ / × ) |
| (9) 정약용은 목민관이 공적 재산을 빼내어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칼뱅에 따르면 직업 활동을 통해 성공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 ( ○ / × ) |

#### MEMO

|                                                                 |           |
|-----------------------------------------------------------------|-----------|
| (1) 맹자는 통치자가 인의(仁義)보다 이로움[利]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맹자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모든 생업에 능통하며 백성을 예의(禮義)로 대한다고 본다.              | ( ○ / × ) |
| (3) 정약용은 공직자가 도(道)를 실현하려는 큰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정약용은 목민관이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5) 맹자와 정약용 모두 통치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수양한 후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맹자는 사회적 신분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 ( ○ / × ) |
| (7) 맹자는 백성이 서로 생산물을 교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8) 맹자는 군주가 모든 생업에 능통함으로써 마땅히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9) 맹자에 따르면 생산과 통치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                | ( ○ / × ) |
| (10) 순자는 각자의 욕망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신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순자는 예의(禮義)와 법도에 따라 각자의 직분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플라톤은 자신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계층은 철저하게 사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순자와 플라톤 모두 개인의 덕(德)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4) 정약용은 목민관이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용(節用)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5) 정약용은 목민관이 청렴하기만 하다면 직무에 능하지 않아도 칭송받을 만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은 애민(愛民)의 마음을 지니고 곤궁한 백성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         | ( ○ / × ) |
| (7) 정약용은 목민관이 공무(公務)를 집행할 때 재물을 탐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8) 순자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순자에 따르면 예(禮)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사회 규범이다.             | ( ○ / × ) |
| (10) 플라톤은 각자 타고난 소질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칼뱅에 따르면 노동은 원죄에 대한 벌이므로 속죄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 (2) 칼뱅은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한 직업적 성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 ( ○ / × ) |
| (3) 순자는 소인(小人)도 수양을 통해 덕(德)을 갖추면 대부(大夫)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4) 순자는 덕(德)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지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맹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도덕적인 마음[恒心]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 ○ / × ) |
| (6)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수양을 통해 누구나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 ○ / × ) |
| (7) 플라톤은 국가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탁월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칼뱅은 직업의 목적이 부의 축적보다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칼뱅에 따르면 직업적 성공은 종교적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 ( ○ / × ) |
| (10) 마르크스에 따르면 기술적 분업을 통해서도 개별 노동자의 특수한 기능이 촉진되지 않는다.     | ( ○ / × ) |

#### MEMO

|                                                              |           |
|--------------------------------------------------------------|-----------|
| (1) 마르크스에 따르면 분업 체제 아래에서 다수의 노동자는 개별 부분 노동자로 존재하게 된다.        | ( ○ / × ) |
| (2) 마르크스에 따르면 기술적 분업은 노동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킨다.                      | ( ○ / × ) |
| (3) 정약용은 바람직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마르크스에 따르면 기술적 분업의 확대는 개인과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 ( ○ / × ) |
| (5) 마르크스에 따르면 기술적 분업은 노동자가 생산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 ( ○ / × ) |
| (6) 마르크스는 기술적 분업이 노동자의 창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는 체제라고 본다.            | ( ○ / × ) |
| (7) 정약용은 공직자가 청렴하기 위해서는 염치(廉恥)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 ( ○ / × ) |
| (8) 공자와 플라톤 모두 국가가 올바르게 되려면 덕(德)에 기반을 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분배받고 필요에 따라 일하는 사회에서 노동 소외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통해 억압과 착취를 해결할 수 있다.              | ( ○ / × ) |

#### MEMO

|                                                                  |           |
|------------------------------------------------------------------|-----------|
| (1) 베버에 따르면 청교도들의 금욕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 ( ○ / × ) |
| (2)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언제나 강제된 노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공자에 따르면 정치에서 형벌은 필요하지만 형벌에만 의존하여 통치해서는 안 된다.                 | ( ○ / × ) |
| (4) 맹자와 순자 모두 통치자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을 부여할 때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베버에 따르면 청교도들은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하지 않고 구걸하는 것을 죄악시 하였다.          | ( ○ / × ) |
| (6) 맹자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7) 플라톤에 따르면 지혜는 각 덕목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최고의 덕목이다.                   | ( ○ / × ) |
| (8) 순자는 예(禮)로써 사람들의 무분별한 욕구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본가와의 협력을 통해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이 노동자의 자아실현을 방해하여 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칼뱅은 직업적 성공을 거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칼뱅에 따르면 직업 활동의 궁극 목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직업 활동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될 수 있다. | ( ○ / × ) |
| (3) 칼뱅은 직업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과 신의 소명 실천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4) 플라톤에 따르면 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일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 ( ○ / × ) |
| (5) 플라톤과 달리 마르크스는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이상적인 삶이 실현된다고 본다.               | ( ○ / × ) |
| (6) 플라톤과 달리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사유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플라톤에 따르면 절제는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덕이다.      | ( ○ / × ) |
| (8) 순자는 예(禮)가 인간의 성정(性情)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인위적 규범이라고 본다.          | ( ○ / × ) |
| (9)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을 위해서만 수행된다고 본다.     | ( ○ / × ) |
| (10) 칼뱅에 따르면 직업적 성공은 구원의 현세적 징표가 될 수 있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마르크스에 따르면 분업에 따른 업무의 세분화는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 ○ / × ) |
| (2)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와 자본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 ( ○ / × ) |
| (3) 칼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정약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곤궁한 처지에 놓인 백성을 도우려는 어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 ( ○ / × ) |
| (5) 베버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에게 직업에서의 성공은 구원의 징표였다.                 | ( ○ / × ) |
| (6)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칼뱅과 마르크스 모두 개인의 노동이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 / × ) |
| (8)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이 모두 갖추어야 하는 공통된 덕목은 없다.       | ( ○ / × ) |
| (9) 공자와 플라톤 모두 개인의 역할 배분은 언제나 이상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 ( ○ / × ) |
| (10) 마르크스에 따르면 매뉴팩처가 발달하여 직업이 세분화될수록 노동 소외는 약화된다.        | ( ○ / × ) |

#### MEMO

|                                                                        |           |
|------------------------------------------------------------------------|-----------|
| (1)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상품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가난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2) 정약용에 따르면 명분이 바른 것은 모두 취하되 명분이 바르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이 최상의 청렴이다.          | ( ○ / × ) |
| (3) 플라톤은 철학과 정치권력이 결합하지 않는 이상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4) 정약용은 목민관이 모든 관례를 버리고 오직 법에 따라서만 곧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정약용은 목민관이 청렴을 실천해야 하므로 녹봉이나 농토를 지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정약용은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민관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 ( ○ / × ) |
| (7)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도덕성과 선의지가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 ( ○ / × ) |
| (8)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속성은 다르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니부어는 집단 속에서 이기적으로 되어 가는 인간의 성향과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사회 부정의가 지속된다고 본다. | ( ○ / × ) |
| (10) 니부어에 따르면 정의 달성을 위한 강제력은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 ○ / × ) |

#### MEMO

|                                                              |           |
|--------------------------------------------------------------|-----------|
| (1) 니부어는 집단 간의 관계가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고 본다.           | ( ○ / × ) |
| (2) 니부어에 따르면 강제력 없이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 × ) |
| (3) 니부어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의 원천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이다.                      | ( ○ / × ) |
| (4) 니부어는 인간 사회에 항구적인 평화와 동포애는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5) 니부어에 따르면 사회적 강제력은 언제나 선의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 ○ / × ) |
| (6) 니부어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민주적인 방법에는 강제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7) 니부어는 강제력의 사용은 언제나 도덕적 이성의 희생을 불러온다고 본다.                  | ( ○ / × ) |
| (8) 니부어에 따르면 선의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회적 강제력은 매우 위험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 ( ○ / × ) |
| (9) 니부어는 사회적 지성이 특권 계층의 요구를 지원하지 않고 비특권 계층을 지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 ( ○ / × ) |
| (10) 니부어에 따르면 강제력은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 ( ○ / × ) |

#### MEMO

|                                                                       |           |
|-----------------------------------------------------------------------|-----------|
| (1) 니부어에 따르면 사회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한다.                          | ( ○ / × ) |
| (2) 니부어에 따르면 인간 이성과 양심은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             | ( ○ / × ) |
| (3) 니부어는 정치의 영역에서 윤리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이 타협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니부어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집단 간 힘의 균형을 더욱 평등하게 이룩하려는 경향을 결여하고 있다.           | ( ○ / × ) |
| (5) 니부어는 한 집단의 이기심이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6) 니부어에 따르면 개인의 합리성 제고는 집단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없다.                        | ( ○ / × ) |
| (7) 니부어는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이타성을 실현하는 것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니부어에 따르면 애국심은 높은 형태의 이기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 ( ○ / × ) |
| (9)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은 개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자기 극복 능력과 타자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 ( ○ / × ) |
| (10) 니부어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니부어는 애국심이 각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니부어는 정치적 해법으로서의 강제력이 사회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 ( ○ / × ) |
| (3)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의 이기적 충동은 외적 강제력을 통해서도 억제되지 않는다.                       | ( ○ / × ) |
| (4) 니부어는 집단 간 이기심의 충돌이 언제나 사회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본다.                        | ( ○ / × ) |
| (5) 니부어는 인간의 이타심과 달리 이기심은 언제나 집단 속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 ( ○ / × ) |
| (6)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의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경우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그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해야 한다. | ( ○ / × ) |
| (7) 니부어는 집단의 이기적 충동을 선의지의 규제를 받는 강제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8) 니부어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오직 국가 공동체의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본다.                        | ( ○ / × ) |
| (9) 니부어는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이 사회 정의 실현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서로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M E M O

|                                                     |           |
|-----------------------------------------------------|-----------|
| (1) 니부어는 도덕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은 타 집단과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2) 니부어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회는 강제력의 제거보다 정당한 강제력의 행사를 중시한다.  | ( ○ / × ) |
| (3) 니부어는 강제력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니부어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강제력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 ○ / × ) |
| (5) 니부어는 도덕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만이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다고 본다.    | ( ○ / × ) |
| (6)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본다.         | ( ○ / × ) |
| (7) 니부어에 따르면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      | ( ○ / × ) |
| (8) 니부어는 집단 간의 관계가 지극히 정치적이기보다는 항상 윤리적이라고 본다.       | ( ○ / × ) |
| (9)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알고 있다.   | ( ○ / × ) |
| (10)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 원초적 합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라고 본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은 현실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다.           | ( ○ / × ) |
| (2)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고 본다. | ( ○ / × ) |
| (3)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을 구상한다.                  | ( ○ / × ) |
| (4) 노직과 달리 롤스는 우연성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본다.           | ( ○ / × ) |
| (6) 롤스와 달리 노직은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노직은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노직에 따르면 최소 국가 또는 최소 국가보다 적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 ○ / × ) |
| (9) 노직은 소유 권리가 있는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받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유 권리가 부여된다고 본다.  | ( ○ / × ) |
| (10) 왈처는 각 사회적 가치가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왈쳐는 각 사회적 가치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본다. | ( ○ / × ) |
| (2) 노직은 소유물과 소유 권리가 일치하는 상태가 곧 정의로운 분배 상태라고 본다.                     | ( ○ / × ) |
| (3) 노직에 따르면 개인 간 소유물의 불평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 ( ○ / × ) |
| (4) 노직은 모든 자산의 분배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 ( ○ / × ) |
| (5) 노직은 과거의 불의가 현재의 소유 권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6) 노직에 따르면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언제나 정의롭다.                | ( ○ / × ) |
| (7) 노직은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이전의 원칙에 따라 양도받은 소유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8)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과정의 정당성에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자격이 창출된다고 본다.                 | ( ○ / × ) |
| (9) 노직은 소유의 과정이 정당했더라도 소유물의 불균등이 부정의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노직은 새로운 소유물이 개인의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노직에 따르면 소유 권리는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 ( ○ / × ) |
| (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두에게 동등한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곧 공정한 분배이다.         | ( ○ / × ) |
| (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특수적 정의에서 정의는 비례적인 것이고, 부정의는 비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 ( ○ / × ) |
| (4)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의 공정함이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 ○ / × ) |
| (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다.                | ( ○ / × ) |
| (6)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재화가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에게 동등한 몫이 분배될 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사라진다고 본다.       | ( ○ / × ) |
| (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교정적 정의는 관련된 당사자들을 동등한 자들로 간주한다.           | ( ○ / × ) |
| (9)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의 분배는 각자가 지닌 가치에 따라 이루어질 때 정의롭다.    | ( ○ / × ) |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섭과 관련된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노직과 달리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 증진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고 본다.                | ( ○ / × ) |
| (3)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질 수 없다.                 | ( ○ / × ) |
| (4)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는 불평등의 원인을 모두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에 놓인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  | ( ○ / × ) |
| (8) 왈처에 따르면 동일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 ○ / × ) |
| (9) 왈처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라고 본다.                      | ( ○ / × ) |
| (10) 왈처는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 M E M O —

|                                                                    |           |
|--------------------------------------------------------------------|-----------|
| (1) 왈처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가치는 각 가치가 지닌 사회적 의미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 ○ / × ) |
| (2) 왈처에 따르면 하나의 사회적 가치는 분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               | ( ○ / × ) |
| (3) 왈처에 따르면 다원적 평등주의 사회란 모든 규모의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이다.                 | ( ○ / × ) |
| (4) 롤스와 달리 왈처는 정의의 원칙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왈처와 달리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도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롤스는 어떠한 기본적 자유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직위와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은 자유 및 기회의 평등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 ( ○ / × ) |
| (8) 왈처는 복합 평등이 실현된 사회에서 특정한 사회적 가치가 소수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 ( ○ / × ) |
| (9) 왈처는 복합 평등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롤스에 따르면 타고난 운으로부터 비롯되는 전망의 불평등으로서의 최초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 ○ / × ) |

— M E M O —

|                                                       |           |
|-------------------------------------------------------|-----------|
| (1)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계층 간 격차는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롤스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가치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 |
| (3) 롤스는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 ( ○ / × ) |
| (4) 롤스는 올바른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에 따르면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어떤 기준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 ( ○ / × ) |
| (6) 롤스와 달리 노직은 개인의 더 우월한 재능이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 / × ) |
| (7) 롤스와 달리 노직은 자연적 자산의 분포를 공유 자산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롤스와 달리 노직은 빈곤한 사람들의 이익 증진을 위한 재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9) 왈처는 각 사회적 가치의 분배 영역에 내재적인 원칙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왈처에 따르면 지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다원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 ( ○ / × ) |

#### MEMO

|                                                         |           |
|---------------------------------------------------------|-----------|
| (1)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왈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이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3) 왈처는 한 사회의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가 하나의 가치에 의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왈처는 독점의 철폐에 앞서 지배의 축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노직에 따르면 분배 정의는 재화가 분배되어 있는 최종적인 양상에 따라 결정된다.        | ( ○ / × ) |
| (6) 노직은 각 사람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사회 전체의 분배도 정당하다고 본다.           | ( ○ / × ) |
| (7) 노직에 따르면 정형적 분배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소유권 침해의 원칙이다. | ( ○ / × ) |
| (8) 노직은 정당한 소유 권리가 정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자에게 부여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노직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화에 대해서는 소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 ( ○ / × ) |
| (10)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점진적 개혁을 통해 자본가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마르크스는 각자의 계급은 타고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각자의 몫은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롤스는 타고난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우연성은 응분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 ( ○ / × ) |
| (3) 롤스에 따르면 각자의 몫이 우연적 요소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정적이다.                   | ( ○ / × ) |
| (4) 노직과 달리 롤스는 타고난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는 같은 능력과 포부를 가졌어도 모두가 같은 성공 전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 / × ) |
| (6) 롤스에 따르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을 금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 ( ○ / × ) |
| (7) 롤스는 원초적 합의의 당사자들이 타인의 우연성만을 알고 자신의 우연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본다.     | ( ○ / × ) |
| (8)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합의의 당사자들은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세목을 알지 못한다. | ( ○ / × ) |
| (9)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합의의 당사자들은 자기 심리적인 특징은 알지만 심리학적 지식은 알지 못한다.          | ( ○ / × ) |
| (10) 왈처는 지배적 가치가 고유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에서 분배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왈처는 한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 × ) |
| (2)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합의의 당사자들은 우연적 요소의 임의성을 제거하기 위해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 | ( ○ / × ) |
| (3)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가능한 대안들 중 최선의 결과가 가장 우월한 것을 채택하고자 한다.             | ( ○ / × ) |
| (4) 롤스는 원초적 합의의 당사자들이 타인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합의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모르지만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다.                       | ( ○ / × ) |
| (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권력과 재화의 몫은 산술적 비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 ○ / × ) |
| (7)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이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8)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합의의 당사자들은 사회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을 알고 있다.                      | ( ○ / × ) |
| (9)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합의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 ( ○ / × ) |
| (10) 노직은 소유 과정의 정당성이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창출한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와 달리 노직은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 ( ○ / × ) |
| (2) 롤스와 달리 노직은 개인이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노직과 달리 롤스는 자연적 자산의 편향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 ( ○ / × ) |
| (4) 왈처는 정의의 다양한 영역 간에 경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5)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가 각 개인의 이익과 손해 외에도 주목하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 ( ○ / × ) |
| (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재화와 권력에 대한 올바른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에 근거한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불평등의 심화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동등한 보장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다. | ( ○ / × ) |
| (8) 롤스에 따르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최소 수혜자를 위한 사후적 재분배 정책에 집중한다.           | ( ○ / × ) |
| (9) 롤스는 소수가 경제와 정치적 삶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롤스는 직위와 직책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노직은 재화를 분배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본다.                                      | ( ○ / × ) |
| (2) 롤스와 달리 노직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롤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사회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4) 롤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 내에서 허용되는 불평등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               | ( ○ / × ) |
| (5) 롤스와 달리 노직은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된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와 노직은 모두 국가가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인신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 그 자체는 부정의하다.                                     | ( ○ / × ) |
| (8) 노직과 달리 롤스는 최소 수혜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9) 롤스와 노직 모두 정의로운 분배 결과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분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 ○ / × ) |
| (10) 노직과 달리 롤스는 천부적으로 유리한 자가 자신의 행운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도덕적 조건이 존재한다고 본다. | ( ○ / × ) |

#### M E M O

|                                                                   |           |
|-------------------------------------------------------------------|-----------|
| (1)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 ( ○ / × ) |
| (2)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우연성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원칙이라고 본다.               | ( ○ / × ) |
| (3)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호혜성을 표현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 ( ○ / × ) |
| (4) 롤스는 불운한 사람들의 처지가 향상된다면 소수가 자신의 운으로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이익의 획득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 상황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 ( ○ / × ) |
| (7) 롤스는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유사한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 ( ○ / × ) |
| (8) 노직은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 ○ / × ) |
| (9) 롤스와 노직 모두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10) 롤스와 달리 왈처는 복지 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M E M O —

|                                                                    |           |
|--------------------------------------------------------------------|-----------|
| (1)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에 제한된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2) 노직은 국가가 개인 간에 자유롭게 맺어진 계약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3) 노직과 달리 롤스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부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4) 롤스와 달리 노직은 자연적 운으로 취한 이득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롤스와 노직 모두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와 노직 모두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된다고 본다.                  | ( ○ / × ) |
| (7)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명예나 금전과 같은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서 각자의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 ( ○ / × ) |
| (8)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일차적인 생활 욕구로서 추구된다.   | ( ○ / × ) |
| (9) 노직은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필연적으로 정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예속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 ○ / × ) |

#### M E M O

|                                                                       |           |
|-----------------------------------------------------------------------|-----------|
| (1) 노직과 달리 마르크스는 이상적인 분배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권이 폐지된 사회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마르크스와 노직 모두 이상적인 분배 실현을 위해 국가가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분배 절차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4) 노직과 달리 롤스는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 × ) |
| (5) 노직과 롤스 모두 복지 국가에서는 분배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노직과 롤스 모두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7) 노직과 롤스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가 발생하였다면 결과적 불평등 그 자체는 부정의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8) 노직에 따르면 중국 상태적 원리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므로 옳지 않다.                       | ( ○ / × ) |
| (9) 롤스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올바른 결과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롤스와 노직 모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노직에 따르면 최소 국가를 넘어서는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 ○ / × ) |
| (2) 노직은 교환의 합법성이 양도하려는 소유물에 대한 합법적 소유에 기초한다고 본다.         | ( ○ / × ) |
| (3) 노직에 따르면 소유권자가 없는 사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 ( ○ / × ) |
| (4) 롤스와 달리 노직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만으로도 개인의 소유 권리가 보장된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은 특정 형태의 정의로운 정부를 세우게 된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있다.                | ( ○ / × ) |
| (7) 롤스는 원초적 합의의 결과가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성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고 본다.   | ( ○ / × ) |
| (8)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 ○ / × ) |
| (9)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은 문화적 원시 상태가 아닌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다.          | ( ○ / × ) |
| (10)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경제학적 지식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가정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는 합리적 존재라고 본다.                   | ( ○ / × ) |
| (2)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서로의 정의감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                      | ( ○ / × ) |
| (3) 노직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과정이 준거해야 하는 정형적 기준을 제시하는 정형적 분배 원칙이다.            | ( ○ / × ) |
| (4) 노직은 타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전받은 재화가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는 개인이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모두가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 ( ○ / × ) |
| (7) 왈처는 분배 기준의 정당성이 공동체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왈처는 정치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경제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왈처에 따르면 한 영역의 가치를 소유한 것이 다른 영역의 가치를 소유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복합 평등 체제이다.   | ( ○ / × ) |
| (10) 노직은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달리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아닌 오직 최소 수혜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원칙이다. | ( ○ / × ) |
| (2) 롤스에 따르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경쟁 시장 체제를 철폐하고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한다.       | ( ○ / × ) |
| (3)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노직에 따르면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 중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 ( ○ / × ) |
| (5) 노직은 사람들의 과거 행위가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는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 자체를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8)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호 교섭에서의 부정의를 교정할 때 당사자들을 동등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롤스와 노직 모두 소수의 기본적 자유가 다수의 이익 창출을 근거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공동체의 법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덕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 ( ○ / × ) |

#### MEMO



|                                                                |           |
|----------------------------------------------------------------|-----------|
| (1) 노직은 도덕적 공과(功過)에 따른 분배 원리가 개인의 과거 행위를 고려하는 역사적 원리라고 주장한다.   | ( ○ / × ) |
| (2) 노직은 도덕적 공과(功過)에 따른 분배 원리가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인 분배 원리라고 본다.          | ( ○ / × ) |
| (3) 노직은 도덕적 공과(功過)에 따른 분배 원리가 비역사적이므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 ( ○ / × ) |
| (4) 노직은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정형적 분배 원리 중 하나라고 본다.                        | ( ○ / × ) |
| (5) 노직은 사회적 유용도에 따른 분배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 ( ○ / × ) |
| (6) 노직은 비정형적이고 역사적인 원칙만이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7) 노직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의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 ( ○ / × ) |
| (8) 노직은 정형적 분배 원리가 정의로운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부정의하다고 본다. | ( ○ / × ) |
| (9) 노직은 정당한 소유 권리의 근거를 역사적이며 비정형적인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 ○ / × ) |
| (10)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을 특정 차원의 배열에 두는 원리에 따른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이 소멸한다.               | ( ○ / × ) |
| (2)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된 사회에서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가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 ( ○ / × ) |
| (4) 노직과 마르크스 모두 국가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시행할 때 이상적인 분배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 / × ) |
| (5) 노직에 따르면 최소 국가는 폭력, 절도, 사기,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 ○ / × ) |
| (6)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은 부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공리의 원칙은 사회가 상호 간의 이익을 협동체라는 관념을 포함할 수 없다.           | ( ○ / × ) |
| (8)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현실에서 당사자들에 의한 실제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고 본다.              | ( ○ / × ) |
| (9)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협동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 / × ) |
| (10) 롤스에 따르면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절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              | ( ○ / × ) |

#### MEMO

|                                                                        |           |
|------------------------------------------------------------------------|-----------|
| (1) 노직은 자신의 노동으로 취득한 재화의 소유가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본다.                       | ( ○ / × ) |
| (2) 롤스와 노직은 모두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의 과정과 결과 각각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 ( ○ / × ) |
| (3)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롤스에 따르면 사적 소유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 ○ / × ) |
| (5) 노직은 과거 상황이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한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는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노직은 자연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소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롤스와 노직은 모두 선천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9) 롤스와 노직은 모두 개인들의 도덕적 공과(功過)를 기준으로 하는 분배만이 정의롭다고 본다.                 | ( ○ / × ) |
| (10) 롤스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의에 부합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노직은 분배 결과에 대해 독립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개인의 소유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들의 최대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3)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가 개인의 노동이나 기본적 필요를 기준으로 할 때 성취된다고 본다.           | ( ○ / × ) |
| (4) 롤스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가 사회 체제의 선택과 기본 구조의 편성과 관련된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에 따르면 적절한 체계의 배경적 제도 없이는 분배적 과정의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다.          | ( ○ / × ) |
| (6) 노직은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 집행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7) 노직은 모든 상황이 취득에서의 정의(正義)와 이전에서의 정의(正義)에 부합한다면 정의롭다고 본다.     | ( ○ / × ) |
| (8) 노직은 모든 현실적 상황이 취득에서의 정의(正義)와 이전에서의 정의(正義)에 의해 생성된다고 본다.    | ( ○ / × ) |
| (9)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분배는 무조건 정의롭다고 본다.           | ( ○ / × ) |
| (10) 롤스에 따르면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와 결부되어야 한다. | ( ○ / × ) |

#### MEMO

|                                                                                    |           |
|------------------------------------------------------------------------------------|-----------|
| (1) 노직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가 재분배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 ( ○ / × ) |
| (2) 노직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사물을 사유화할 때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 ○ / × ) |
| (3) 롤스는 분배가 그 사회에 가담하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이루어질 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개인 간 재능의 차이가 극대화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된다고 본다.                          | ( ○ / × ) |
| (5) 노직과 롤스 모두 개인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자유를 지닌 존재라고 본다.                 | ( ○ / × ) |
| (6) 롤스에 따르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복지 국가 자본주의와 달리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한다.                    | ( ○ / × ) |
| (7) 롤스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8) 롤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공직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 ( ○ / × ) |
| (9)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된 불평등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 ( ○ / × ) |
| (10) 베카리아는 처벌의 목적이 범죄자가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일반인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벤담은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2) 벤담은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 × ) |
| (3) 벤담은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 × ) |
| (4) 벤담에 따르면 형벌로 막을 수 있는 해악과 그 비용은 모두 최소화되어야 한다.                  | ( ○ / × ) |
| (5) 벤담은 처벌로 초래되는 해악이 처벌을 통해 예방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7) 베카리아는 범죄 경중의 척도가 범죄자의 의사보다는 사회에 끼친 해악에 있다고 본다.               | ( ○ / × ) |
| (8) 베카리아와 달리 루소는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자발적 상호 계약에 있다고 본다.             | ( ○ / × ) |
| (9) 루소는 사회 계약을 파기한 살인범은 국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베카리아는 일시적으로 강렬한 본보기보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본보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벤담은 처벌이 처벌받는 개인에게 어떠한 고통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벤담에 따르면 처벌받는 개인에게 과도한 고통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 ( ○ / × ) |
| (3) 벤담은 처벌로 인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쾌락을 근거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4) 벤담에 따르면 처벌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해악이다.                      | ( ○ / × ) |
| (5) 벤담은 처벌의 목적이 범죄자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벤담은 모든 폐해는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벤담은 처벌의 정당성이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할 때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칸트는 살인범에게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여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 ( ○ / × ) |
| (10) 칸트는 형벌이 언제나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칸트는 형벌의 목적이 공동체의 이익 증진이 아니라 범죄자의 인격 교화에 있다고 본다.                | ( ○ / × ) |
| (2)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자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 ( ○ / × ) |
| (3)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의 정당성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 × ) |
| (4)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일반인이 두려움 때문에 유사한 범죄를 범할 수 없도록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 × ) |
| (5)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함에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 | ( ○ / × ) |
| (6)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사형의 정당성이 생명 보존을 위해 맺은 사회 계약에 의해 성립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 × ) |
| (7) 벤담은 형벌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 ○ / × ) |
| (8) 칸트와 달리 벤담은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형벌의 주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9) 벤담은 형벌이 교정이 아닌 본보기의 방식을 통해 범죄자의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언제나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져야 한다.            | ( ○ / × ) |

#### MEMO



|                                                                 |           |
|-----------------------------------------------------------------|-----------|
| (1) 칸트는 형벌을 통해 범죄자가 스스로 의욕한 처벌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베카리아가 보기에 루소는 사회 계약 과정에서 생명을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 × ) |
| (3) 베카리아가 보기에 루소는 개인들의 자발적 상호 계약에 따라 형벌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 × ) |
| (4) 루소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살인범에게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로서 사형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 × ) |
| (5)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정언 명령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필요악이다.                | ( ○ / × ) |
| (6) 루소는 살인범도 사회 계약에 참여한 자이므로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칸트와 달리 베카리아는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초래한 범죄가 가장 중한 범죄라고 본다.            | ( ○ / × ) |
| (8) 칸트와 루소와 달리 베카리아는 사형이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9) 베카리아와 달리 칸트와 루소는 모두 국가가 살인범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지닌다고 본다.          | ( ○ / × ) |
| (10) 칸트는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루소는 계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 ( ○ / × ) |
| (2) 베카리아와 루소 모두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칸트에 따르면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죽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 될 수는 없다.                | ( ○ / × ) |
| (4) 칸트는 형벌이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 × ) |
| (5) 칸트는 균형의 원리에 따라 형벌의 양과 질은 오직 보복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루소와 베카리아와 달리 칸트는 형벌권의 기초가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동의에 있다고 본다.         | ( ○ / × ) |
| (7) 벤담은 형벌의 양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유혹의 강도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벤담은 형벌로 초래될 해악이 아니라 형벌을 통해 예방될 해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칸트와 벤담 모두 형벌은 공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10) 베카리아는 형벌이 일반인에게는 가능한 한 효과적이면서 범죄자에게는 가능한 한 관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 당사자들이 가능한 최대한도의 해악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본다.           | ( ○ / × ) |
| (2) 벤담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범죄자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칸트는 형벌에서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4) 칸트에 따르면 범죄자는 형벌 받기를 의욕한 것이 아니라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한 것이다.         | ( ○ / × ) |
| (5) 칸트에 따르면 사형 이외의 보복과 살인죄 사이에 동등성이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              | ( ○ / × ) |
| (6) 베카리아와 칸트 모두 형벌이 범죄와의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베카리아는 형벌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베카리아는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신체에 되도록 큰 고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칸트는 형벌을 집행할 때 범죄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칸트에 따르면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그가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 ( ○ / × ) |

#### MEMO

|                                                                          |           |
|--------------------------------------------------------------------------|-----------|
| (1) 루소에 따르면 사형에 동의하는 주된 목적은 자기 생명의 보존이 아니라 처벌에 있다.                       | ( ○ / × ) |
| (2)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 자신의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칸트에 따르면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하는 가혹성으로부터 범죄자를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 ○ / × ) |
| (4) 베카리아는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형벌은 충분한 엄격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강도 그 이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 ( ○ / × ) |
| (6) 루소와 칸트 모두 공적 정의 실현이 형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칸트와 달리 루소는 살인범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살인범의 동의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의 일차적 목적은 범죄로 손상된 사회 전체의 선과 이익을 회복하는 데 있다.               | ( ○ / × ) |
| (9)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와 시민의 행위를 통제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루소는 오직 사형을 통해서만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베카리아와 달리 루소는 본보기를 위해 형벌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회의 법은 각자의 개인적 자유 중 최대한의 몫을 모은 것이다.                | ( ○ / × ) |
| (3) 칸트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루소에 따르면 모든 살인범은 예외 없이 사회 계약을 파기한 자로 간주된다.                    | ( ○ / × ) |
| (5) 루소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는 그가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공적인 선포와 같다고 본다.     | ( ○ / × ) |
| (6) 베카리아와 루소 모두 사회 계약이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루소와 칸트 모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 ( ○ / × ) |
| (8) 베카리아와 달리 칸트와 루소는 모두 살인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9) 베카리아에 따르면 종신 노역형은 사형과 달리 범죄자의 고통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킨다.             | ( ○ / × ) |
| (10)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에 대한 시민의 공포가 상상 속에서 더욱 증폭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의 타고난 인격성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 ( ○ / × ) |
| (2) 칸트는 형벌을 스스로 의욕한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베카리아와 달리 루소는 사형의 정당성 여부가 사회 계약에 따라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루소와 달리 베카리아는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비효과적인 형벌이다.                      | ( ○ / × ) |
| (6) 루소와 달리 베카리아는 사형이 살인범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7) 베카리아와 달리 루소는 사형이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고 본다.               | ( ○ / × ) |
| (8) 루소는 형벌이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칸트, 벤담, 베카리아, 루소 모두 형벌이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10) 벤담은 공동체의 선을 촉진하는 형벌도 그 자체로는 악이라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벤담은 형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형벌의 고통과 사회적 효용이 동등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2) 벤담과 루소 모두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정당화 가능하다고 본다.                     | ( ○ / × ) |
| (3) 루소는 사형이 사회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자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4) 벤담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형벌만이 선(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5) 루소, 베카리아, 벤담과 달리 칸트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양과 질이 오직 보복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베카리아와 달리 칸트는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벌은 언제나 공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 ( ○ / × ) |
| (7) 루소와 베카리아는 모두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8) 베카리아에 따르면 법은 인간의 행동을 순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잔혹한 본보기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 ○ / × ) |
| (9)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사형이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라고 본다.                      | ( ○ / × ) |
| (10)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의 강도보다는 지속도가 인간의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베카리아와 달리 칸트는 형벌의 실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응보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권은 사회 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한다.       | ( ○ / × ) |
| (3) 칸트는 응보적 형벌은 인간을 단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형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효과의 확실성은 떨어진다고 본다.                    | ( ○ / × ) |
| (5) 루소와 달리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서는 사형제의 정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이미 행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서 공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본다.    | ( ○ / × ) |
| (7)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의 크기는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          | ( ○ / × ) |
| (8) 베카리아에 따르면 본보기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인상을 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 ( ○ / × ) |
| (9)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의 목적은 위험과 희생 없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 ( ○ / × ) |
| (10) 베카리아와 칸트와 달리 루소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 안전이라는 형벌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베카리아와 달리 루소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루소는 시민의 생명이 국가에서 조건부로 주는 선물이라고 본다.                             | ( ○ / × ) |
| (3) 루소에 따르면 사회의 시민은 언제나 법이 요구하는 위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 ( ○ / × ) |
| (4) 루소는 모든 범죄자가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죄로 인해 공공의 적이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벤담에 따르면 형벌의 가치는 확실성과 근접성의 측면에서 범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 쉽다. | ( ○ / × ) |
| (6) 벤담은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는 형벌은 그 자체로 선(善)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7) 벤담은 사회적 해악의 제거를 의도한 형벌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 ( ○ / × ) |
| (8)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은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9) 벤담은 형벌이 산출하는 해악이 형벌이 방지하는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베카리아와 벤담은 모두 동해 보복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벌의 질과 양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베카리아와 달리 루소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들이 살인범에 대한 사형 부과에 동의한다고 본다.      | ( ○ / × ) |
| (2) 베카리아와 루소는 모두 사형제가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실행되는 정당한 형벌이라고 본다.      | ( ○ / × ) |
| (3) 루소에 따르면 살인범은 사회 계약을 위반한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체가 아니다.              | ( ○ / × ) |
| (4) 루소에 따르면 살인범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살인범을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 ( ○ / × ) |
| (5) 칸트가 보기에 루소와 벤담은 모두 형벌이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 ( ○ / × ) |
| (6) 루소와 벤담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벤담에 따르면 형벌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필요악이다.               | ( ○ / × ) |
| (8) 벤담이 보기에 칸트는 사회적 이익 창출을 위해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 × ) |
| (9) 칸트는 살인범에 대해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 ( ○ / × ) |
| (10) 칸트가 보기에 베카리아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사회 계약에 어긋나지 않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 ○ / × ) |

#### MEMO

|                                                                   |           |
|-------------------------------------------------------------------|-----------|
| (1) 칸트가 보기에 루소는 살인범이 시민적 인격성이 아니라 생득적 인격성을 상실함을 간과한다.             | ( ○ / × ) |
| (2)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은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 계약을 근거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 ( ○ / × ) |
| (3) 베카리아는 법은 살인을 금지하므로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고 본다.                   | ( ○ / × ) |
| (4)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라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칸트는 살인범은 다른 인간과 달리 목적적 대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 ○ / × ) |
| (6)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이 범죄자에게 주는 해악은 범죄를 통한 범죄자의 이익보다 커야 한다.            | ( ○ / × ) |
| (7)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인도주의적 동정심을 바탕으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형보다 약한 강도의 인상을 제공하는 형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 ○ / × ) |
| (9) 벤담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부과하는 형벌은 허용될 수 없는 악이라고 본다.                      | ( ○ / × ) |
| (10) 칸트가 보기에 루소와 베카리아는 범죄자가 오직 처벌을 의욕했다는 이유 하나로 처벌 받아야 함을 간과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칸트와 달리 벤담과 베카리아는 모두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한다고 본다.      | ( ○ / × ) |
| (2) 칸트와 달리 벤담과 베카리아는 모두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클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3) 벤담과 베카리아와 달리 칸트는 형벌이 외부의 선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루소에 따르면 주권자가 아닌 정부만이 범죄자에게 처벌을 부여할 수 있다.                 | ( ○ / × ) |
| (5) 루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권자에게 있다고 본다.               | ( ○ / × ) |
| (6) 베카리아에 따르면 잔혹한 형벌은 오히려 형벌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 ○ / × ) |
| (7) 칸트에 따르면 범죄자에게 자신의 자율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 ( ○ / × ) |
| (8) 벤담은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므로 공리성의 원리에 의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9) 벤담에 따르면 처벌의 목적은 일반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에 있다.           | ( ○ / × ) |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법과 정의 없이 완성될 수 없는 존재라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급자족적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가족이나 부락 같은 다른 공동체들처럼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 발생한 것이다.                 | ( ○ / × ) |
| (3)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만이 완전히 자급자족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4)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구성원들이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이다. | ( ○ / × ) |
| (5)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의 권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 ( ○ / × ) |
| (6) 묵자와 달리 맹자는 군주가 자국보다 타국을 우선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한비자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군주는 엄격한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8) 한비자에 따르면 적절한 포상과 처벌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 ( ○ / × ) |
| (9) 공자와 맹자는 모두 백성을 형벌로 다스리기에 앞서 덕(德)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공자와 맹자는 모두 군주가 먼저 스스로 인격을 닦아 덕(德)을 쌓은 후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공자와 맹자는 모두 군주가 백성의 뜻을 존중하여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공자에 따르면 백성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분배에서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 × ) |
| (3) 로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 ( ○ / × ) |
| (4) 홉스는 강제력이 없는 곳에는 소유권도 없고 오직 부정의만이 있다고 본다.                 | ( ○ / × ) |
| (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 ( ○ / × ) |
| (6) 홉스에 따르면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다.                        | ( ○ / × ) |
| (7) 홉스는 계약의 유효성이 그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고 본다.     | ( ○ / × ) |
| (8) 홉스와 루소 모두 사회 계약이 모든 사회 계약 주체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고 본다.       | ( ○ / × ) |
| (9) 로크는 국가의 권력이 인민의 안전이나 공공선과 무관한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 |

#### MEMO

|                                                                  |           |
|------------------------------------------------------------------|-----------|
| (1) 로크는 개인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수립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루소에 따르면 주권이란 일반 의지의 행사이며, 양도와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 ○ / × ) |
| (3) 루소는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며,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 ○ / × ) |
| (4) 루소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 의지가 확립된다.           | ( ○ / × ) |
| (5) 루소는 모든 개인이 사회 계약을 통해 사적 의지에 종속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의지이다.                  | ( ○ / × ) |
| (7) 밀은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밀에 따르면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어떤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화된다. | ( ○ / × ) |
| (9) 공자는 군주가 재화를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공자는 군주가 상벌에 우선하여 백성을 인(仁)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공자는 군주가 전체 재화의 부족함을 무엇보다 염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로크는 공통의 법률과 권력 없이 개인은 재산을 향유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3)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일체의 규범뿐만 아니라 자기 이성의 지배로부터도 자유롭다.  | ( ○ / × ) |
| (4) 맹자는 백성의 생업 보장이 왕도(王道) 정치의 시작이라고 본다.                  | ( ○ / × ) |
| (5) 맹자는 군주가 덕(德)으로 정사[政]를 주관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6) 한비자는 군주가 덕치(德治)가 아니라 법치(法治)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한비자는 인간이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을 탐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 ( ○ / × ) |
| (8) 한비자와 달리 맹자는 군주가 선한 백성과 악한 백성을 분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공자는 군주가 고르지 못한 분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플라톤은 통치자가 구성원 각자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밀은 국가가 선택 의도로 개인의 행위에 간섭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 ( ○ / × ) |
| (4)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국가만이 어떤 선(善)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 ( ○ / × ) |
| (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불의가 개인들의 자기 보존을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 ( ○ / × ) |
| (6)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7) 홉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으로서의 자연법을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홉스는 인간이 평화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로크는 자연법의 위반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연 상태의 폐단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10) 로크에 따르면 국가의 주목적은 그 국가에 속한 전 구성원의 재산 보존이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로크는 자연 상태에는 공정한 재판관이나 집행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로크는 어떤 개인에게도 자신의 동의 없이 정치권력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로크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할 때 개개인은 처벌권을 비롯하여 자연권 전부를 공동체에 양도한다.                      | ( ○ / × ) |
| (4) 홉스에 따르면 공통의 권력 수립은 부정의의 관념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 ( ○ / × ) |
| (5)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재판관이나 집행관이 되기를 자처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6) 홉스는 자연 상태의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 ( ○ / × ) |
| (7) 홉스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인민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를 지니고 있다.          | ( ○ / × ) |
| (8) 로크는 각자의 자연법의 집행권이 양도되지 않은 곳에서는 정치 공동체가 수립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9) 로크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의 행위만을 통제할 수 있다.                               | ( ○ / × ) |
| (10) 로크와 달리 홉스는 강제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홉스와 달리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로크는 절대 군주제가 결코 시민 사회와 양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루소는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루소는 인간 사이에서 성립하는 정당한 권위의 기초는 오직 동의뿐이라고 본다.                    | ( ○ / × ) |
| (5) 루소는 국가가 오직 공통된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에 따라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6) 루소에 따르면 국가가 형성될 때 개개인이 자신의 자연권 전부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 ( ○ / × ) |
| (7)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이 시민의 미덕 양성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 보장에 있다고 본다.            | ( ○ / × ) |
| (8)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국가라는 도덕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본다.         | ( ○ / × ) |
| (9)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인식 능력이 있어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국가에서는 좋은 시민으로서의 선(善)과 좋은 사람으로서의 선(善)이 일치한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자기 완결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목자는 천하의 해악이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한비자에 따르면 군주는 남이 자신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을 유도해야 한다.                                | ( ○ / × ) |
| (4) 목자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천하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목자는 군주가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재화의 소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한비자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위와 신분에 무관하게 모두가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목자와 한비자 모두 군주가 위세[勢]의 높음이 아닌 지혜의 높음으로 천하를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루소는 사회 계약이 시민들이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에서 어떤 자유도 누리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 ( ○ / × ) |
| (9)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처벌권이 각 개인에 의해 규칙적이고 확정적으로 행사된다고 본다.                             | ( ○ / × ) |
| (10)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이 모든 사적 의지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로크는 정부의 신탁 위반 여부가 최종적으로 시민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홉스는 통치자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신의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본다.                              | ( ○ / × ) |
| (3) 루소는 공공의 평화를 위해 계약 주체들이 주권자인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는 좋은 목적을 위해 형성된다.                                     | ( ○ / × ) |
| (5)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 ( ○ / × ) |
| (6) 공자와 달리 묵자는 나의 나라와 남의 나라를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사랑[兼愛]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 보전을 추구해야 한다.                         | ( ○ / × ) |
| (8)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 ( ○ / × ) |
| (9) 홉스는 군주가 모든 인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루소에 따르면 각 개인은 사회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평등한 관계를 포기하게 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한비자와 달리 맹자는 군주가 백성의 생업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맹자와 달리 한비자는 군주가 백성에게 포상과 처벌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맹자와 한비자 모두 통치자가 자신을 수양하여 인의(仁義)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묵자와 달리 맹자는 군주가 하늘의 뜻[天命]에 따라 올바르게 정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맹자는 군주가 덕(德)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인륜(人倫)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묵자에 따르면 모두가 서로를 이롭게 해 주는 것은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다.            | ( ○ / × ) |
| (7) 묵자는 자기 가족과 남의 가족을 분별없이 대하는 사랑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본다.         | ( ○ / × ) |
| (8) 맹자는 하늘의 뜻이 백성을 통해 나타나므로 군주는 백성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로크는 인민이 입법부를 자의적으로 폐지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 ○ / × ) |
| (10) 로크에 따르면 입법권은 인민의 자연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이다. | ( ○ / × ) |

#### MEMO

|                                                                |           |
|----------------------------------------------------------------|-----------|
| (1)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지만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는 있다.              | ( ○ / × ) |
| (2) 루소는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자연 발생적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3) 루소에 따르면 주권과 주권에 의해 파생된 권리는 동일하다.                           | ( ○ / × ) |
| (4) 로크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시민은 자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 ○ / × ) |
| (5) 홉스는 국가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이 주권자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홉스는 국가가 군주와 시민 간 상호 계약 체결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홉스와 달리 로크는 통치자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홉스와 달리 루소는 법에 복종하는 존재가 법을 제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로크와 달리 루소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할 때에도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 ( ○ / × ) |
| (10) 로크는 입법권이 국가의 최고 권력인 동시에 시민에 의해 선택된 권력이라고 본다.              | ( ○ / × ) |

#### — M E M O —

|                                                           |           |
|-----------------------------------------------------------|-----------|
| (1) 홉스에 따르면 인민은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의무를 갖는다.         | ( ○ / × ) |
| (2) 홉스는 인민과 달리 주권자는 사회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다.               | ( ○ / × ) |
| (3) 루소는 사회 계약에 의해 국가라는 공적 인격의 결합체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루소에 따르면 주권과 달리 입법권은 양도될 수 있다.                         | ( ○ / × ) |
| (5) 홉스는 오직 주권자만이 신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6) 로크는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므로 공동선을 넘어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로크는 국가 권력이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과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홉스에 따르면 주권은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 ( ○ / × ) |
| (9) 목자에 따르면 군주는 남의 나라를 공격하거나 먼저 침략하여서는 안 된다.              | ( ○ / × ) |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권위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루소와 달리 홉스는 주권과 입법권이 양도 가능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속성을 띤다고 본다.            | ( ○ / × ) |
| (2)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구성원의 생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 ( ○ / × ) |
| (3) 공자와 달리 한비자는 군주가 백성들의 이기적 본성을 다스릴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한비자와 달리 공자는 군주가 도덕적 감화를 통해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로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평등하지만 자유롭지는 않다.                          | ( ○ / × ) |
| (6) 로크는 개인의 동의가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7) 로크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력을 갖는다.                      | ( ○ / × ) |
| (8) 로크는 입법권이 신탁된 권력에 불과하므로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홉스는 군주가 사회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구성원의 힘과 의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로크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가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로크와 달리 홉스는 국가 권위의 정당성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2) 홉스와 로크 모두 자연 상태에는 개인이 준수해야 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홉스와 루소 모두 국가 구성원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맹자에 따르면 군주는 이로움보다 인의(仁義)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 ○ / × ) |
| (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 본성으로 성립된 국가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가지게 된다.                  | ( ○ / × ) |
| (6) 한비자와 달리 공자는 군주가 인(仁)이 실현된 도덕 공동체의 구현을 통치의 궁극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로크에 따르면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 ○ / × ) |
| (8)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연법의 부재로 혼란을 겪는다.                          | ( ○ / × ) |
| (9)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연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                  | ( ○ / × ) |
| (10) 루소에 따르면 개인은 국가 내에서 스스로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입법자가 된다.                     | ( ○ / × ) |

#### MEMO

|                                                                   |           |
|-------------------------------------------------------------------|-----------|
| (1)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2) 홉스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공동의 평화를 위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는 도덕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한다.                    | ( ○ / × ) |
| (4) 홉스는 사회 계약을 맺을 때 개인들이 자기 보존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전면 양도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홉스와 로크 모두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로크와 달리 홉스는 자연 상태의 평화 유지를 위해 자연권의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홉스와 달리 로크는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홉스와 로크 모두 사회 상태에서는 권력의 집중보다 권력의 분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홉스와 달리 로크는 사회 계약을 맺을 때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 ○ / × ) |
| (10)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 모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개인이 국가에 저항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로크는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로크와 달리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3) 홉스와 로크 모두 인간이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 ( ○ / × ) |
| (4) 홉스와 로크 모두 인간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국가 성립 이후에 발생한다고 본다.             | ( ○ / × ) |
| (5) 홉스와 달리 루소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주권자의 대리인인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6)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루소는 국가 권력이 구성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홉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국가의 기원은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있다고 본다.   | ( ○ / × ) |
| (8) 홉스에 따르면 각 개인은 절대 권력의 수립을 위해 생명의 위협에 저항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다.    | ( ○ / × ) |
| (9) 홉스, 루소,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국가 안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본다.      | ( ○ / × ) |
| (10)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는 국민의 소유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로크는 공통의 법률이나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이 자연권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로크에 따르면 개인은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한다.                  | ( ○ / × ) |
| (3) 로크에 따르면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한다.                 | ( ○ / × ) |
| (4) 로크는 개인들이 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한다고 본다. | ( ○ / × ) |
| (5) 밀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밀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본다.    | ( ○ / × ) |
| (7) 공자는 군주가 솔선하여 선(善)을 이루게 되면 백성이 교화되어 선하게 된다고 본다.             | ( ○ / × ) |
| (8) 공자와 맹자는 모두 군주가 백성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禮)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힘으로 복종시킴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맹자에 따르면 백성은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 ( ○ / × ) |

#### MEMO

|                                                                           |           |
|---------------------------------------------------------------------------|-----------|
| (1) 맹자에 따르면 패도(霸道)는 인(仁)을 가장하지 않고 오직 힘과 위압만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정치이다.              | ( ○ / × ) |
| (2) 맹자에 따르면 패자(霸者)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거듭함으로써 대국(大國)을 소유하게 된다.                 | ( ○ / × ) |
| (3)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백성이 군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홉스에 따르면 공통의 권력이 수립되기 이전의 상태는 험악하고 잔인하며 비참하다.                          | ( ○ / × ) |
| (5) 홉스와 로크 모두 개인의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자연권에 속한다고 본다.                            | ( ○ / × ) |
| (6) 로크와 달리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자연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7)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서만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8) 홉스와 로크와 달리 루소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주권자로서 입법권을 지니며 입법권은 일부의 수중에 맡겨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루소는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 계약의 목적이라고 본다.     | ( ○ / × ) |
| (10) 로크는 국가의 최고 통치 권력이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부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홉스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한 존재이므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와 같다고 본다.                 | ( ○ / × ) |
| (2) 홉스에 따르면 자연권이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 ○ / × ) |
| (3) 홉스와 달리 로크는 자연권에 자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 ( ○ / × ) |
| (4) 루소와 달리 홉스와 로크는 모두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를 지키고 불의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한다고 본다. | ( ○ / × ) |
| (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 ( ○ / × ) |
| (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상호 간에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교역을 촉진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 ( ○ / × ) |
| (7)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호 간에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교역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본다.     | ( ○ / × ) |
| (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초로 생겨난 공동체이다.                   | ( ○ / × ) |
| (9)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최고선 실현을 위해서는 고립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족이나 부락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족이나 부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물질적 측면이 아닌 도덕적 측면에서 자족성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홉스와 달리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의 향유가 확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홉스는 절대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시민의 자유가 공존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5) 홉스가 보기에 로크는 사회 계약 이전에는 각자에게 고유한 재산권이 없음을 간과한다.             | ( ○ / × ) |
| (6)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 ○ / × ) |
| (7)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8) 로크가 보기에 홉스는 입법권이 사회 계약의 참여자에게 있지 않음을 간과한다.                 | ( ○ / × ) |
| (9)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것을 명한다.         | ( ○ / × ) |
| (10) 홉스가 보기에 로크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시 처벌권을 양도해야 함을 간과한다.           | ( ○ / × ) |

#### MEMO



|                                                                                |           |
|--------------------------------------------------------------------------------|-----------|
| (1) 홉스가 보기에 로크는 자연 상태가 이기적 개인에 의해 부정의한 행위가 발생하는 상태임을 간과한다.                     | ( ○ / × ) |
| (2) 로크에 따르면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 × ) |
| (3) 홉스가 보기에 로크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개인의 소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 ○ / × ) |
| (4) 홉스가 보기에 루소는 사회 상태에서 개인들은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 / × ) |
| (5) 홉스는 개인이 자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념이 아니라 이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 ○ / × ) |
| (6) 로크와 루소 모두 개인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동기가 사유 재산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 ( ○ / × ) |
| (7) 홉스와 루소 모두 국민이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라고 본다.                                      | ( ○ / × ) |
| (8) 루소는 국가가 완전한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개인은 인간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의 규칙을 이성으로 발견하게 된다.               | ( ○ / × ) |
| (10) 로크는 사회 계약 과정에서 재산권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홉스와 달리 로크는 시민이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보장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 ( ○ / × ) |
| (2) 로크와 달리 홉스는 주권자가 유일한 입법자라고 본다.                               | ( ○ / × ) |
| (3) 홉스와 달리 로크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로크와 달리 홉스는 국가 권력이 개인이 지닌 모든 자연권의 조건 없는 양도로 수립된다고 본다.        | ( ○ / × ) |
| (5) 홉스에 따르면 인간의 정념과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평화로 향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 / × ) |
| (6) 홉스는 사회 계약 과정에서 양도되는 권리에 자기 생명 보존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7) 홉스에 따르면 다수의 신의 계약으로 국가가 수립되기 전에는 부정의가 만연할 뿐이다.              | ( ○ / × ) |
| (8) 홉스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안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평화로운 삶의 영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홉스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상호 계약으로부터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홉스는 국가가 상호 신의 계약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자연적 인격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M E M O

|                                                                 |           |
|-----------------------------------------------------------------|-----------|
| (1)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 모두 국가가 개인에 우선하는 계약의 산물이라고 본다.                   | ( ○ / × ) |
| (2) 홉스는 인민이 아니라 주권자만이 상호 신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 ○ / × ) |
| (3) 유교에 따르면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 ( ○ / × ) |
| (4) 플라톤은 개인의 타고난 기능이 국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5)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존재이며,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7)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오직 심각하게 부정한 체제의 사회에서만 성립한다고 본다.                 | ( ○ / × ) |
| (8)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 ○ / × ) |
| (9)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를 벗어나 부정의에 항거하는 행위라고 본다.           | ( ○ / × ) |
| (10)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정의에 대한 극심한 위반이 발생하는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 ( ○ / × ) |
| (2)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에게는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롤스와 싱어와 달리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일부 부정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싱어에 따르면 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 불복종 행위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거부해야 한다.        | ( ○ / × ) |
| (5) 소로는 인간이 불의한 제도를 지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소로는 인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에 앞서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소로는 양심에 따라 악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본다.              | ( ○ / × ) |
| (9)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할 자연적 의무는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부정을 묵인할 것을 요구한다. | ( ○ / × ) |
| (10)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 신념의 표현이자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는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과 양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 ( ○ / × ) |
| (2)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 ( ○ / × ) |
| (3)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법과 제도가 부정한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 ( ○ / × ) |
| (4) 롤스에 따르면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의에 대한 항거는 언제나 시민 불복종에 속하게 된다.                      | ( ○ / × ) |
| (5)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헌법과 사회 제도를 규제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 ( ○ / × ) |
| (6)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주체들은 시민 불복종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부정의 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 ○ / × ) |
| (7) 싱어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의해서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8) 롤스는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에 시민 불복종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 ( ○ / × ) |
| (9) 롤스에 따르면 다소 심각한 부정을 발생시키는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다.                   | ( ○ / × ) |
| (10) 롤스에 따르면 법의 부정은 그 법에 정당하게 항거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롤스와 싱어와 달리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법과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언제나 다수에 대한 합법적 호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 ○ / × ) |
| (3) 롤스에 따르면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발생하지 않는다.       | ( ○ / × ) |
| (4) 롤스와 달리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롤스와 달리 싱어는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합법적 행위이다.      | ( ○ / × ) |
| (7)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헌법을 규제하는 정치적 원칙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8) 싱어와 달리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롤스와 달리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다수의 정의감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 ( ○ / × ) |
| (10) 싱어는 다수의 진정한 결정이 심각하게 그릇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와 달리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숙고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 ○ / × ) |
| (2)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이며 처벌을 감수한다는 점에서 법치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3) 싱어와 달리 롤스는 다수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 행위는 항의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한 법만을 위반할 것을 요구한다.                     | ( ○ / × ) |
| (5)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다수에 대한 강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본다.                               | ( ○ / × ) |
| (6)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 ( ○ / × ) |
| (7) 싱어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결정은 언제나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8) 소로와 롤스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법을 교정하기 위한 양심적인 행위라고 본다.                        | ( ○ / × ) |
| (9)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하는 시도이다.                                 | ( ○ / × ) |
| (10)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므로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 수는 없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합당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 ( ○ / × ) |
| (2) 롤스는 시민 불복종으로 체제의 효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롤스는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롤스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만이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 / × ) |
| (5) 롤스와 달리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인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다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7)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거나 위협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 ( ○ / × ) |
| (8)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롭다면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없다.               | ( ○ / × ) |
| (10)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주의적 결정의 복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 협동체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 ( ○ / × ) |
| (2)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에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 × ) |
| (3)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한 법이 존재한다.                            | ( ○ / × ) |
| (4) 롤스는 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 싱어, 소로 모두 경우에 따라 부정의한 법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롤스, 싱어, 소로 모두 시민 불복종에 우선하여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롤스는 시민 불복종 행위가 그 자체로 극심한 무질서를 초래하지만 부정의한 법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8)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롤스는 부당한 법에 대한 소수자의 항거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 ( ○ / × ) |
| (10)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이익 증진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에 있다고 본다.                | ( ○ / × ) |

#### — M E M O —

|                                                           |           |
|-----------------------------------------------------------|-----------|
| (1)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이 산출하는 이익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 ○ / × ) |
| (2) 싱어와 달리 소로는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 / × ) |
| (3) 소로와 달리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 ○ / × ) |
| (4) 롤스에 따르면 질서 정연한 사회는 입헌 체제와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 ( ○ / × ) |
| (5)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효과적인 호소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계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는 소수가 일으킨 시민 불복종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와 법의 경계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8) 롤스는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는 시민 불복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 / × ) |
| (9) 롤스와 달리 싱어는 자유를 침해받아 온 소수의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10) 롤스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자체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           |
|--------------------------------------------------------------|-----------|
| (1) 소로에 따르면 법의 충실한 준수는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하지 않는다.                    | ( ○ / × ) |
| (2) 롤스는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3)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을 하기 전에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모든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헌법의 해석 기준인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 지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에 따르면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            | ( ○ / × ) |
| (7)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은 모두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8)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공중의 정의감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 ( ○ / × ) |
| (9)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대상으로 한다.                   | ( ○ / × ) |
| (10) 싱어는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롤스는 민주 정부에서 제정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 ○ / × ) |
| (2)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 ( ○ / × ) |
| (3)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을 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4)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본다.           | ( ○ / × ) |
| (5)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6)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항의 대상과 실제 불복종하는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 |
| (8)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하고 효율적인 반대 형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9)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불복종이지만 동시에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킬 수 있는 악의 크기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비롯한 정의의 원칙은 모두 시민 불복종의 근거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 ○ / × ) |
| (2)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 ( ○ / × ) |
| (3)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 ( ○ / × ) |
| (4)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법은 언제나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부정의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 중 오직 차등의 원칙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 ) |
| (8)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정의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9)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 ○ / × ) |
| (10)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 × ) |

#### — M E M O —

|                                                                              |           |
|------------------------------------------------------------------------------|-----------|
| (1) 롤스에 따르면 어떤 법이 차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 불복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 ( ○ / × ) |
| (2)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 |
| (3) 롤스는 어떤 법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 ( ○ / × ) |
| (4)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5)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결과로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이 제정될 수는 없다.                           | ( ○ / × ) |
| (6)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시민 불복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 / × ) |
| (7) 롤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법은 마땅히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8)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불법적 항거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9)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하고 현저한 위반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을 비롯한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불가능하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와 달리 소로와 싱어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해 즉각적인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2) 싱어는 동물의 이익을 옹호하는 위법 행위가 시민 불복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3) 롤스는 입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법이 제정되었다면 그 법은 정의로움이 보장된다고 본다.               | ( ○ / × ) |
| (4) 롤스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만이 참여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 ○ / × ) |
| (5) 싱어는 다수가 지지하는 법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다수에게 알리거나 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법의 정의로움을 판단할 독립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는 존재한다. | ( ○ / × ) |
| (8) 롤스에 따르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것은 효율적일 수도, 언제나 올바른 결과만을 도출할 수도 없다.      | ( ○ / × ) |
| (9) 롤스는 다수결의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 × ) |
| (10) 싱어와 달리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보다 확인하기 쉽다.   | ( ○ / × ) |
| (2) 싱어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된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는 어려워진다고 본다.        | ( ○ / × ) |
| (3)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 개혁을 위해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 ( ○ / × ) |
| (4) 롤스는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민 불복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는 종교적 교설에 근거하여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개인적인 도덕 원리나 종교적 교설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을 지지하는 경우는 없다.  | ( ○ / × ) |
| (8) 롤스는 다수의 종교적 교설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9) 롤스는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모든 저항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 ( ○ / × ) |
| (10)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가 아니다.             | ( ○ / × ) |

#### MEMO



|                                                                        |           |
|------------------------------------------------------------------------|-----------|
| (1)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 ○ / × ) |
| (2)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통해 제정된 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 |
| (3)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결 원칙의 한계로 인한 결과에 저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4) 롤스와 달리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 × ) |
| (5) 롤스는 민주 사회에서 다수자가 제정한 법은 그 자체로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 ( ○ / × ) |
| (6)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하고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항거라고 본다.                      | ( ○ / × ) |
| (7)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일어나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성립한다.              | ( ○ / × ) |
| (8)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MEMO

# 정답표

| 단원명    | 정답                                                                                                                                                                                                                        | 단원명   | 정답                                                                                                                                                                                                                                                                                                    |
|--------|---------------------------------------------------------------------------------------------------------------------------------------------------------------------------------------------------------------------------|-------|-------------------------------------------------------------------------------------------------------------------------------------------------------------------------------------------------------------------------------------------------------------------------------------------------------|
| 직업 윤리  | <p>01 ~ 10 : XOOOX XOOOX</p> <p>11 ~ 20 : OOOXO O 공자 순자 맹자 맹자</p> <p>21 ~ 30 : XXX 플라톤 칼뱅 베버</p>                                                                                                                          | 분배 정의 | <p>01 ~ 10 : XOOXO XXXXX</p> <p>11 ~ 20 : OOOOO OXOOO</p> <p>21 ~ 30 : OOOOO OXXOX</p> <p>31 ~ 40 : OXOXO XXOOO</p> <p>41 ~ 50 : OOXOO OOOOO</p> <p>51 ~ 60 : XXOOO XOOOO</p> <p>61 ~ 70 : XOXOO XXOOX</p> <p>71 ~ 80 : XOOOO XOOOX</p> <p>81 ~ 90 : XOOOX XXOOX</p> <p>91 ~ 96 : XXOXX O</p>         |
| 형벌     | <p>01 ~ 10 : OXOXO XXXXO</p> <p>11 ~ 20 : XXOOO OXOXX</p> <p>21 ~ 30 : XXXXX XXXOX</p> <p>31 ~ 40 : XOOOO 칸트 OOXX</p> <p>41 ~ 50 : XOOXX XOXOO</p> <p>51 ~ 60 : XXOOX OOOXX</p> <p>61 ~ 70 : XOXOO XOOXX</p>              | 국가 윤리 | <p>01 ~ 10 : XOOXO XXXOX</p> <p>11 ~ 20 : OXOOO XOXOX</p> <p>21 ~ 30 : OOXOX XXOOO</p> <p>31 ~ 40 : XOOXX XXOOX</p> <p>41 ~ 50 : XXOXX XOXOX</p> <p>51 ~ 60 : XXXXO OOXOO</p> <p>61 ~ 70 : OOOXO XOXOX</p> <p>71 ~ 80 : OXOXX OXXOX</p> <p>81 ~ 90 : XXOXO XO로크 로크 로크</p> <p>91 ~ 99 : XXOOO XXOO</p> |
| 시민 불복종 | <p>01 ~ 10 : XXOXX OOOOX</p> <p>11 ~ 20 : XXXXX XXXOO</p> <p>21 ~ 30 : XXOXO OXOX로스</p> <p>31 ~ 40 : XXXXX OXOOX</p> <p>41 ~ 50 : XXOOX OXXOO</p> <p>51 ~ 60 : OOOOX OXOXX</p> <p>61 ~ 70 : OXOXO OXOOO</p> <p>71 : X</p> |       |                                                                                                                                                                                                                                                                                                       |

| 쪽수   | 정답     |        |        |       |
|------|--------|--------|--------|-------|
| 134쪽 | ① 순자   | ② 칼뱅   | ③ 순자   | ④ 정약용 |
| 135쪽 | ① 플라톤  | ② 순자   | ③ 맹자   | ④ 플라톤 |
| 136쪽 | ① 공자   | ② 칼뱅   | ③ 마르크스 | ④ 베버  |
| 137쪽 | ① 정약용  | ② 순자   | ③ 플라톤  | ④ 맹자  |
| 138쪽 | ① 순자   | ② 마르크스 | ③ 플라톤  | ④ 맹자  |
| 139쪽 | ① 마르크스 | ② 플라톤  | ③ 정약용  | ④ 플라톤 |
| 140쪽 | ① 정약용  | ② 니부어  | ③ 니부어  | ④ 니부어 |

| 쪽수   | 정답        |           |           |           |
|------|-----------|-----------|-----------|-----------|
| 141쪽 | ① 니부어     | ② 니부어     | ③ 롤스      | ④ 왈처      |
| 142쪽 | ① 왈처      | ② 노직      | ③ 아리스토텔레스 | ④ 롤스      |
| 143쪽 | ① 왈처      | ② 왈처      | ③ 롤스      | ④ 롤스      |
| 144쪽 | ① 노직      | ② 왈처      | ③ 마르크스    | ④ 노직      |
| 145쪽 | ① 롤스      | ② 노직      | ③ 롤스      | ④ 왈처      |
| 146쪽 | ① 롤스      | ② 롤스      | ③ 노직      | ④ 롤스      |
| 147쪽 | ① 아리스토텔레스 | ② 노직      | ③ 마르크스    | ④ 노직      |
| 148쪽 | ① 롤스      | ② 노직      | ③ 노직      | ④ 롤스      |
| 149쪽 | ① 칸트      | ② 벤담      | ③ 루소      | ④ 벤담      |
| 150쪽 | ① 벤담      | ② 칸트      | ③ 칸트      | ④ 베카리아    |
| 151쪽 | ① 칸트      | ② 베카리아    | ③ 베카리아    | ④ 베카리아    |
| 152쪽 | ① 베카리아    | ② 베카리아    | ③ 루소      | ④ 벤담      |
| 153쪽 | ① 칸트      | ② 루소      | ③ 베카리아    | ④ 벤담      |
| 154쪽 | ① 벤담      | ② 칸트      | ③ 루소      | ④ 아리스토텔레스 |
| 155쪽 | ① 아리스토텔레스 | ② 로크      | ③ 유교      | ④ 루소      |
| 156쪽 | ① 유교      | ② 흄스      | ③ 로크      | ④ 한비자     |
| 157쪽 | ① 루소      | ② 로크      | ③ 플라톤     | ④ 흄스      |
| 158쪽 | ① 밀       | ② 흄스      | ③ 로크      | ④ 목자      |
| 159쪽 | ① 한비자     | ② 아리스토텔레스 | ③ 루소      | ④ 유교      |
| 160쪽 | ① 밀       | ② 유교      | ③ 로크      | ④ 한비자     |
| 161쪽 | ① 목자      | ② 흄스      | ③ 로크      | ④ 흄스      |
| 162쪽 | ① 흄스      | ② 아리스토텔레스 | ③ 로크      | ④ 로크      |
| 163쪽 | ① 루소      | ② 흄스      | ③ 흄스      | ④ 로크      |
| 164쪽 | ① 아리스토텔레스 | ② 흄스      | ③ 롤스      | ④ 롤스      |

| 쪽수   | 정답   |      |      |      |
|------|------|------|------|------|
| 165쪽 | ① 소로 | ② 룰스 | ③ 싱어 | ④ 소로 |
| 166쪽 | ① 룰스 | ② 소로 | ③ 룰스 | ④ 룰스 |
| 167쪽 | ① 싱어 | ② 싱어 | ③ 룰스 | ④ 룰스 |
| 168쪽 | ① 싱어 | ② 룰스 |      |      |

| 쪽수   | 정답                    | 쪽수   | 정답                    |
|------|-----------------------|------|-----------------------|
| 169쪽 | O O X X O   O O O X O | 170쪽 | O O X X X   X O O X O |
| 171쪽 | O X X X O   X X O X X | 172쪽 | O X X O O   X O O O O |
| 173쪽 | O O X X O   O O X X O | 174쪽 | O X O O O   X X X X X |
| 175쪽 | O X O O O   X O O O X | 176쪽 | O O O X O   X O O X X |
| 177쪽 | X X O O O   X O X O O | 178쪽 | O O X O O   X X X O O |
| 179쪽 | X X O O O   O X O O X | 180쪽 | X X O O O   X X X O X |
| 181쪽 | O X O O X   O O O X O | 182쪽 | X O O O X   X O O X X |
| 183쪽 | O O X O X   O X O X O | 184쪽 | O O O O O   O X O X X |
| 185쪽 | X X O X O   O O O O O | 186쪽 | O X X O O   X O X X X |
| 187쪽 | X X O X X   O X X O X | 188쪽 | O O O O O   X X O X O |
| 189쪽 | O O X X O   X X O O X | 190쪽 | O X X X X   O O X X X |
| 191쪽 | X O O X X   O O X O O | 192쪽 | O O X O O   X O X O O |
| 193쪽 | X O X X X   O X O X O | 194쪽 | O X O O O   O X O O O |
| 195쪽 | X X X O X   O O X O X | 196쪽 | O X X O X   O O X O X |
| 197쪽 | O O O O X   X O O O O | 198쪽 | O O X O X   O O O O X |
| 199쪽 | X O O X X   X X O X X | 200쪽 | O X X O O   X X O X O |

| 쪽수   | 정답                    | 쪽수   | 정답                    |
|------|-----------------------|------|-----------------------|
| 201쪽 | X X X O X   O O X O X | 202쪽 | O O O O X   O X X O X |
| 203쪽 | O O O O O   O O X O X | 204쪽 | O X X X O   X X X O X |
| 205쪽 | O X O X O   X O O X O | 206쪽 | O O X X X   O O O O X |
| 207쪽 | X X O O O   O O O X O | 208쪽 | X X O O O   X O X O O |
| 209쪽 | O O X O O   O O X O X | 210쪽 | O O O O O   O O X X X |
| 211쪽 | O X O O O   X O O X O | 212쪽 | O O X O O   O O X O O |
| 213쪽 | O O O X O   X O O O O | 214쪽 | O X O X O   O O O O O |
| 215쪽 | X O O O X   O O X O O | 216쪽 | X O X X X   O O O X O |
| 217쪽 | X O X O X   X O O O O | 218쪽 | X O O O O   X O X O X |
| 219쪽 | X X O O O   O O X O O | 220쪽 | X O O O X   O O O O X |
| 221쪽 | X X O O O   O X O O O | 222쪽 | O X X O X   X O O O O |
| 223쪽 | X O O X O   X O O X O | 224쪽 | O O O X X   X O O X O |
| 225쪽 | X O X O X   X X X O X | 226쪽 | O X O O X   O O O X O |
| 227쪽 | X O O X X   O X X X X | 228쪽 | O X O X X   O O X O O |
| 229쪽 | X O O O O   X O X O O | 230쪽 | O O X X O   O O O O O |
| 231쪽 | O O O O X   O X X X O | 232쪽 | X X X O O   O O X O X |
| 233쪽 | X O O X X   O O O X O | 234쪽 | O O X X X   O X O X O |
| 235쪽 | X O O O O   X X O O O | 236쪽 | O X O O O   O X X X O |
| 237쪽 | O X X O O   O X O O X | 238쪽 | X X X X O   O X O X O |
| 239쪽 | X X X X O   X O O X O | 240쪽 | O O O X X   X O O O X |
| 241쪽 | X O O O X   O X O O O | 242쪽 | X X X O O   O X X O O |

| 쪽수   | 정답                    | 쪽수   | 정답                    |
|------|-----------------------|------|-----------------------|
| 243쪽 | O X X O X   X X X X X | 244쪽 | X X O X X   X X X O O |
| 245쪽 | X O X X X   X O X X O | 246쪽 | X O O O X   X X O O X |
| 247쪽 | X O X X X   X X X O O | 248쪽 | O X X X O   O X X O X |
| 249쪽 | X X X X X   O X O O X | 250쪽 | X O X X O   O X X X X |
| 251쪽 | X X O O O   O X O X X | 252쪽 | X X O X O   O O O X O |
| 253쪽 | X X O X O   X X X X O | 254쪽 | O X X X X   X O O X X |
| 255쪽 | X O O X X   O X O O X | 256쪽 | X O X X O   O O X X O |
| 257쪽 | X X O O X   X X O X X | 258쪽 | O X X O O   X X X X X |
| 259쪽 | O O O X O   X X X X X | 260쪽 | X X O X O   X X O O O |
| 261쪽 | X O X X X   X X X O X | 262쪽 | O X O X X   X X X O X |
| 263쪽 | X O X X X   O X X X X | 264쪽 | O X X O X   X X X X O |
| 265쪽 | X X O X X   X O O     |      |                       |